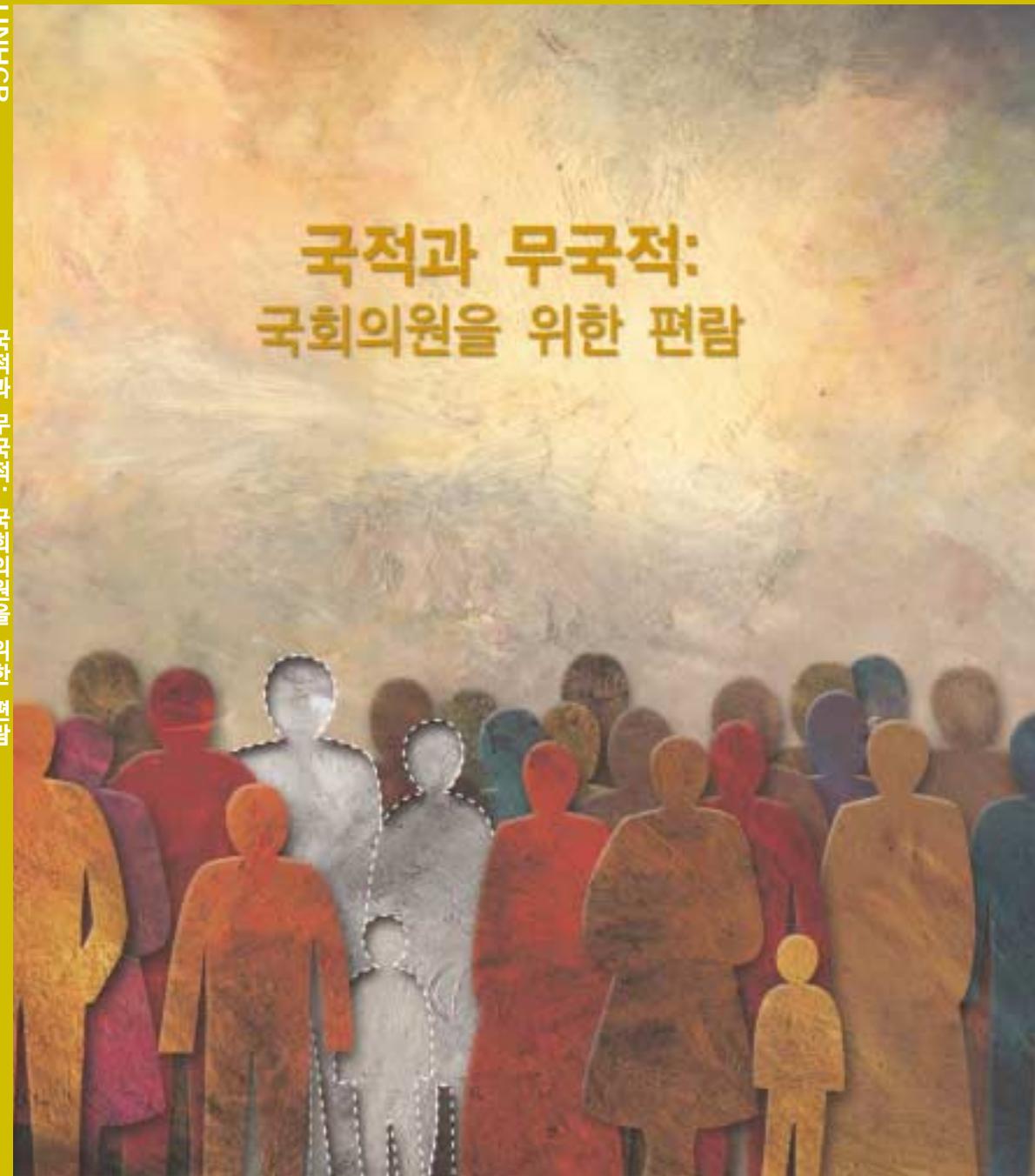


UNHCR

국적과 무국적 : 국회의원에 대한 편람

국적과 무국적: 국회의원을 위한 편람



“국적은 다른 권리를 향유하기 위한 권리라는 점에서
인간의 기본권이다”

얼 워렌 수석 판사 (미국 1958)

IPU

국적과 무국적

국회위원을 위한 편람

감사의 글

이 편람은 국제의회연맹(IPU)의 민주주의/인권 상임위원회와의 협력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조사 및 분석: Carol Batchelor, Philippe Leclerc (UNHCR)

저자: Marilyn Achiron

편집위원회:

UNHCR: Erika Feller, Philippe Leclerc, José Riera, Sara Baschetti

IPU: Anders B. Johnsson, Kareen Jabre

원문: 영어

표지디자인: Jacques Wandfluh, Studio Infographie, Switzerland

인쇄: Presses Centrales de Lausanne, Switzerland

“모든 인간은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어느 누구도 임의적으로 국적을 박탈당하거나 그의 국적을 바꿀 권리를 부인 당하지 아니한다.” 이 같은 명시로서 1948년 세계인권선언 제 15조는 전 세계 모든 이들에게 국가와 법적인 연계를 향유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시민권 혹은 국적 (국제법에서 쓰이듯이, 본 편람에서도 두 용어를 번갈아 사용)은 개인에게 정체성을 제공할 뿐 아니라,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와 다른 시민적·정치적 권리들을 부여합니다. 이 때문에 국적은 “권리들을 향유할 권리”라 일컬어져 왔습니다.

국적의 취득, 상실 및 거부에 관한 국제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는 지금도 수 백만 명의 사람들이 국적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무국적자입니다. 무국적은 관련 법률의 해석의 차이, 국가 영토의 이양, 혼인법, 행정집행, 차별, 출생신고 미비, 국적의 상실 (한 국가가 개인의 국적 박탈 시), 또는 국적의 포기 (한 개인이 자국의 보호 거부 시) 등의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세계의 무국적자들 중 많은 이들은 강제 이주의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집과 터전을 잃은 실향민들의 경우, 특히 국경선이 변경되면, 무국적의 상태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달리 말하면, 무국적자와 국적을 상실한 이들은 종종 삶의 터전이던 주거지를 강제로 떠나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러한 연관성이 유엔총회가 유엔난민기구 (UNHCR)를 무국적자의 발생 예방과 감소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임명한 이유입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에는 약 1,100만 명의 무국적자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통계는 어디까지나 추정치일 뿐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가 별로 무국적의 개념을 달리 해석하는 경우가 많고, 각 국 정부가 흔히 무국적자 관련 정보의 공개를 꺼리며, 뿐만 아니라, 무국적자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우선 논의의 과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간 국제사회는 인권 존중이 대량 탈출과 강제 이주를 방지하는데 기여함을 더욱 인식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 국제 협약에 포함되어 있는 원칙을 바탕으로 무국적자 문제 해결에 대한 국가의 책임에 대한 인식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각 국 정부는 해당 국가와 진실되고 유효한 유대를 증명할 수 있는 개인으로 부터 그가 향유하는 국적의 혜택을 박탈하거나 보류할 권리가 없다는 점을 형식과 실천에 있어 인정해야만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무국적 발생의 감소와 근절을 위해 확고한 결의를 표명할 수 있는 최선책은 개인의 국적을 임의로 박탈할 수 없으며, 무국적자가 될 위기에 처한 이들이 국적을 부여 받을 수 있고, 또한 이미 무국적자가 되어버린 경우에 이들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원칙들을 갖춘 국제법과 일관성이 있는 국내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국회의원은 중요한 파수꾼으로서, 부주의한 또는 의도적인 정책이 무국적을 조장하는 상

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우며, 무국적 문제 해결을 위한 자국 정부 노력을 장려하고, 무국적 문제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 편람은 관련 사안들을 소개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며, 국회의원들이 무국적 문제의 인도적인 면을 잊지 않고 취할 수 있는 행동들을 제시합니다. 본 편람이 무국적에 처한 전 세계 수 백만 명의 성인 남녀와 어린이들을 위한 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구하려고 노력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유용한 자료로 쓰여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난민고등판무관



앤더스 B. 존슨
국제의회연맹 사무총장

목차

감사의 글	2
들어가는 말	3
서문	6
제 1장: 국적을 가질 권리 및 무국적자의 감소를 위한 국제법 체계	8
제 2장: 무국적자의 확인 및 보호	17
제 3장: 무국적 발생 요인의 근절	27
제 4장: 유엔난민기구의 역할	43
제 5장: 국회의원의 역할	48
부록 1: 1954년 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협약 체결국	53
부록 2: 1961년 무국적자의 감소에 관한 협약 체결국	55
부록 3: 조약 승계 양식	56
부록 4: 유엔난민기구 사무소	58
UNHCR과 IPU 소개	67

서문

한 국가의 국민인 우리는 국적이 부여하는 권리와 의무를 대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를 대부분이 자녀를 학교에 등록시키고, 몸이 아플 때는 의료 진료를 받고, 필요할 때는 일자리를 구하기도 하며, 우리의 대표자를 선출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에 유대감을 느끼며, 개개인 이상의 의미를 지닌 무언가에 속해 있다는 깊은 소속감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국적이 없는 무국적자들의 삶은 어떠할까요? 국적 없이는 거주하고 있는 나라에서 투표를 할 수도, 여행 증명서를 신청할 수도, 혼인 신고를 할 수도 없습니다. 무국적자로서 출신국가 밖에 있거나 이전 장기거주국가 밖에 있다가 국가에 재입국을 불허당한 경우, 장기간 구금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교육받을 권리, 의료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직업을 갖을 권리조차 한 나라와의 법적인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들 무국적자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살고 있는 나라에서 ‘거부’를 당하고 제가 태어난 나라에서도 ‘거부’당했으며, 심지어 저의 부모가 태어난 나라에서조차 ‘거부’를 당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당신은 우리에게 소속되지 않아’라는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제 자신이 아무 것도 아니라 느꼈고 도대체 왜 살아야 하는 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무국적자로서의 삶이란 항상 당신이 아무 것도 아닌 존재라는 상실감을 느껴야하는 삶입니다.”

과거 무국적자였던 라라

2003년 UNHCR이 실시한 무국적자에 관한 조사는 무국적자를 야기할 만한 원인이 전 세계 각지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무국적자의 정확한 수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들이 정확한 정보 제공을 꺼리거나,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며 소수 국가 만이 무국적자 등록 제도를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가에게 자국 영토 내에 거주하고 있는 무국적자의 수를 조사, 보고해야 하는 명확한 의무가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전 세계적으로 수 백만 명의 사람들이 효력 있는 국적 없이 살아가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상반기 들어 처음으로 국제 사회에 부각되기 시작한 무국적 문제는 개인의 법적 신원에 관한 국가 간 해석의 차이, 국가 승계, 특정 사회집단이 겪는 장기간의 사회적 소외, 또는 개인이나 특정 사회 집단 구성원에 대한 국적 박탈에 기인합니다. 대개 무국적은 국제 관계가 큰 변화를 겪는 시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국가 간 국경선의 변화, 불투명한 정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국내 정치 지도자의 정치제도 조작, 또는 인종적, 종교적 혹은 민족적 사회 소수자들을 배제 혹은 소외시키기 위해 이들의 국적을 거부하거나 박탈하기 때문에 무국적자의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을 계속 방치한다면, 이들이 겪는 심한 박탈감이 결국 실항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적을 박탈당하는 것은 곧 세상으로부터의 박탈과 같다; 이는 마치 원시인이나 야만인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과 같다..... 다른 이들이 자신을 동등한 인간으로서 대우할 수 있도록 하는 특성을 잃은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기여도 하지 못한 채 흔적 없이 살다가 죽을 것이다.”

하나 아렌트, <전체주의의 기원>에서

이 편람은 각 국의 국회의원들에게 국적과 무국적을 규정하는 국제사회의 원칙에 관한 포괄적인 설명을 제공합니다. 국제법은 각 국가가 자국 국민을 정의하고, 국적의 취득과 소멸, 보유의 조건을 규정하는데 있어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권리가 무국적 문제를 야기하거나 차별적인 방식으로 적용된다면, 20세기 전반에 발전되어 온 인권 규범에 의해 국가의 재량권은 제한되게 됩니다.

국가들이 협력하여 무국적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이 시점에도 전 세계에는 수 백만 명의 사람들이 국적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편람은 국제법, 특히 1954년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무국적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해 논하고 있습니다. (UNHCR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직 57개국 만이 1954년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였습니다; 이와는 상반되게 146개국이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였습니다.) 이 편람은 무국적 발생의 주요 원인을 다루고, 각 국 정부의 국내법 적용이 무국적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들을 논의합니다.

UNHCR은 유엔산하기구로서, 무국적자의 감소를 도모하고 무국적자들이 효과적인 국적을 보유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본 편람은 유엔난민기구가 이러한 임무를 어떻게 수행하는지도 설명합니다. 또한 각 국의 의원들이 무국적 문제의 발생 감소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자국 국적법의 재검토 및 개정, 혹은 자국의 무국적 문제 관련 국제협약 가입 촉구, 그리고 무국적자 관련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의식 향상 등 실제적인 실천 방안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 편람은 오래된 무국적 문제들이 관련 국가들의 정치적 의지, 시민사회의 참여, 그리고 국제사회의 지원에 힘입어 해결될 수 있었던 긍정적인 사례들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람직한 실천”들은 정부와 사회 그리고 국제사회가 함께 협력할 때 무국적자들이 비로소 “권리들을 향유할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1 장

국적을 가질 권리 및 무국적자의 감소를 위한 국제법 체계

국적은 국가의 주권과 정체성의 표현이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국적에 대한 논쟁이 국가 안팎의 긴장과 분쟁을 초래할 수 있고, 종종 초래한다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20세기는 세계적으로 무국적자가 증가함과 동시에 인권에 대한 인식과 관심도 높아진 한 세기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국적에 관한 국제법은 첫째, 기존의 무국적자를 보호·지원하고, 둘째, 무국적 상태를 없애거나 최소한 이를 감소 시키기 위한 두 가지 방향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어떤 개인이 특정 국가의 국민임을 누가 결정하는가?

원칙적으로 국적의 문제는 각 국의 국내 관할권 내에 있습니다. 하지만 한 국가의 국적에 대한 내부적 결정의 적용은 다른 국가들의 유사한 결정이나 국제법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1923년 튀니지-모로코 국적 포고령(The Tunis and Morocco Nationality Decrees of 1923)에 관한 권고적 의견 중 **상설 국제 사법재판소(Permanent Court of International Justice)**는 다음과 같이 명시했습니다.

“특정 사안이 한 국가의 관할권만의 문제인가는 본래 상대적인 것이다. 즉, 이는 국제 관계의 발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상설 국제 사법재판소는 국적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국내 관할권 내의 문제이지만, 국가는 국제법 규범에 따른 다른 국가에 대한 의무도 존중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7년 후 **국적법의 상충에 관한 헤이그 협약(Hague Convention on Certain Questions Relating to the Conflict of Nationality Laws)**에서 재확인되었습니다. 실제로 상설 국제 사법재판소의 1923년 권고적 의견이 1930년 국적에 관한 헤이그 협약의 준비와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많은 국가들은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1923년 권고적 의견이 특히 자국의 국적관련 결정이 다른 국가가 내린 국적 관련 결정과 상충되는 경우 그 결정의 적용을 제한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국제연맹총회가 주관한 1930년 헤이그 협약는 모든 사람의 국적보유를 보장하기 위한 최초의 국제적 시도였습니다. 헤이그 협약 제1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각 국가는 자국법에 따라 누가 자국민인지를 결정한다. 이 법이 국제 협약, 국제 관습 및 국적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된 법의 원칙에 부합할 경우 다른 국가도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국제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는 자국민을 결정하는 스스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20세기 내내 이러한 국적 관련 규정들은 점차 국가의 주권보다는 인권을 더욱 존중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습니다.

1948년 **세계 인권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의 제15조는 다음과 같이 천명합니다: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국적을 박탈당하거나 그의 국적을 바꿀 권리를 부인 당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권리는 개인과 국가 간에 존재하는 **진정하고 유효한 연관성(genuine and effective link)**에 기초합니다. 1995년 **국제사법재판소**의 노테봄 사건(Nottebohm Case)에 대한 결정은 처음으로 이러한 연관성을 국적의 기초로 인정한 사례입니다. 당시 국제 사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국가의 관행, 중재적 및 사법적 결정, 법률가들의 의견 등에 의하면 국적은 상호적인 권리와 의무의 존재와 함께 애착, 진정한 연관, 이해관계 및 감정의 사회적 사실을 그 기초로 하는 법적인 유대관계이다.”

진정하고 유효한 연관은 출생, 거주 그리고/또는 혈통에 의해 분명해지며 이는 현재 대부분 국가의 국적법 규정과 1997년 국적에 관한 유럽 협약과 같은 국적과 관련된 최근의 국제법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미주 인권재판소는 국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정 국가에 한 개인을 연결시키고 충성과 충실의 끈으로 그를 국가에 구속시키면서 그에게 국가로부터 외교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정치적 및 법적 유대관계”[카스틸로-페트루찌 외 대 페루(Castillo-Petruzzi et al v. Peru), 1999년 5월 판결, 미주 인권재판소 [ser.C] No. 52 1999].

난민과 무국적자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되는가?

비록 세계 인권 선언 제15조가 모든 사람에게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각 개인에게 부여되는 특정 국적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국적과 관련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제 사회는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1954년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 등 두 가지 주요 조약을 마련하였습니다.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은 무국적의 문제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제2차 세계 대전 직후 새롭게 창설된 유엔의 회원국들이 당면한 가장 긴급한 문제 중 하나는 전쟁으로 인하여 난민이 되거나 무국적자가 된 수 백만 명의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1949년 유엔 경제 사회 이사회(UN Economic and Social

Council, ECOSOC)의 결의안을 통해 난민 및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을 마련하고 무국적 상태를 근절하기 위한 제안을 다루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하는 특별 위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결국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무국적자에 초점을 맞춘 본 협약의 의정서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본 위원회는 무국적 상태의 근절 문제는 충분히 다루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주로 당시 신설된 유엔 국제법 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 ILC)가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난민과 무국적자들은 모두 유엔난민기구의 전신인 국제난민기구로부터 보호와 지원을 받았습니다. 무국적자에 관한 의정서 초안은 난민과 무국적자 사이의 이러한 연관성을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난민들의 필요가 긴박하였고 국제난민기구(International Refugee Organization)가 곧 해체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난민과 무국적자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개최된 1951년 전권외교회의에서 무국적자의 상황을 자세히 분석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회의에서는 1951년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만이 채택되었고 무국적자에 관한 의정서의 채택은 추후로 연기되었습니다.

1951년 난민협약에 따라 무국적 난민은 난민으로서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으로 인한 국적의 자의적 부인은 그 사람이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함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54년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Stateless Persons)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가?

1951년 난민 협약의 부속서 초안으로 작성된 무국적자에 관한 의정서는 1954년 독립된 협약으로 채택되었습니다. 1954년 협약은 무국적자의 지위를 규율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주요 국제법이며 무국적자가 자신의 기본권과 자유를 차별 없이 부여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 협약의 규정들은 많은 면에서 1951년 난민 협약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 협약에 가입하였다면 협약국의 영토에서 태어나고 장기 거주(habitually resident)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국적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국적자에게 얼마나 많은 권리가 부여되든지 간에 국적을 취득하는 것과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1954년 협약은 무국적자의 법적 정의를 “어떠한 국가에 의하여도 그의 법률의 시행상 국민으로 간주되지 않는 자”로 엄격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를 법적 무국적(*de jure stateless*)이라고 합니다].

국민이란? 무국적자란?

법적으로 국민으로 간주된다는 것은 그 국가의 국적 관련 법령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자동적으로 국민으로 간주되거나 관련 당국의 결정을 통하여 국적이 부여되었음을 의

미합니다. 위 국적 관련 법령은 헌법, 대통령령 또는 국적법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은 한 국가만의 법에 따라 국민으로 간주되며 태어난 국가(출생지 주의, *ius soli*) 혹은 출생 시 부모의 국적국(혈통주의 *ius sanguinis*)의 법에 따라 국적이 부여됩니다.

국적을 부여할 때 행정 절차상 재량권이 인정되는 경우, 신청이 완료되어 승인되고 국가의 법에 따라 국적이 부여될 때까지는 국적신청자가 국민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국적신청자와 신청자격이 있는 자 중 신청이 거부된 자는 국가의 법에 따라 국민이 아닙니다.

어떤 국가의 법에 의해서건 국적을 자동적으로 혹은 개별적인 결정에 의해 취득하지 못한 사람을 **법적 무국적자(*de jure stateless*)**라고 합니다. 즉 그 사람에게 적용 가능한 법에 따른 무국적자입니다.

국적이 없다는 증거가 없는 한 국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한 개인이 여러 국가와 진정한 연관이 있는 경우 어떤 국가가 그에게 국적을 부여하였는지에 대하여 국가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은 그가 법적 무국적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도 없지만 유효한 국적도 없고 국가의 보호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사실상 무국적자(*de facto stateless*)**로 간주됩니다.

비록 이 협약의 초안자들은 법적 무국적자(어떤 국가의 법에 의해서건 국적을 자동적으로 혹은 개별적인 결정에 의해 취득하지 못한 사람)와 사실상 무국적자(국적을 증명할 수 없는 사람)를 구분할 필요는 느꼈지만, 양자의 지위의 유사성도 인정하였습니다. 이 협약의 최종 의정서는 구속력이 없는 권고를 통하여 사실상 무국적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각 체약국은 한 국가의 국적을 가진 자가 그 국가의 보호를 포기함에 있어서 유효한 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본 협약이 무국적자에게 부여하는 처우를 그에게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각 당사국은 어떤 사람이 이 협약상의 권익을 부여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기존의 자체적인 절차에 따라 결정합니다. 요청이 있는 경우, 유엔난민기구는 각 국가의 사무소 또는 본부를 통하여 이러한 절차의 마련과 실행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합니다.(유엔난민기구 사무소 연락처를 담은 부록 4 참조)

무국적자도 난민이 될 수 있는가?

사실상 무국적자는 1954년 협약의 무국적자 정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1954년 협약의 초안자들은 유효한 국적이 없는 모든 사람 즉 모든 사실상 무국적자는 난민이라고 가정하였습니다. (이 협약의 초안자들은 국가의 박해를 피해 국적국을 탈출한 이후에 사실상 무국적자가 되며, 이러한 박해가 유효한 국적의 결여와 관련이 있다고 가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정에 따르면 사실상 무국적자들은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의 규정에 따른 국제적 지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법적 혹은 사실상 무국적이 반드시 박해가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는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난민에 대한 정의의 핵심입니다.) 지난 수 년간 사실상 무국적자들 중에는 장기 거주국에서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나 난민이나 법적 무국적자의 자격 요건에 속하지 않는 이들이 있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실제로 유엔난민기구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무국적자의 대부분은 법적 혹은 사실상 무국적자를 불문하고, 난민이 아니며 비호를 부여받은 근거가 없습니다.

1961년 무국적자의 감소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eduction of Statelessness)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가?

1950년 8월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는 결의를 통해 국제법 위원회에게 무국적 상태의 근절을 위한 국제 협약 초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국제법 위원회는 여러 법의 상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무국적의 문제를 다루는 두 가지 협약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중 하나는 장래의 무국적자의 근절에 관한 협약으로서 장래의 무국적자의 감소에 초점을 맞춘 다른 협약보다 적극적인 규정을 많이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소집된 회의의 참석자들은 전자의 협약이 지나치게 급진적이라고 판단하고 장래의 무국적자의 감소에 관한 협약 초안을 검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결국 탄생한 것이 **1961년 무국적자의 감소에 관한 협약**입니다.(협약체약국 목록은 부록 2 참조)

이 협약의 조항들은 무국적 상태를 출생 시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특정 상황에서 국적을 박탈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거나 현재의 모든 무국적자에게 소급하여 국적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협약은 이 협약상의 이익을 주장하는 자가 자신의 청구의 심사를 신청하고 담당기관에 신청서를 제출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후 유엔 총회는 유엔난민기구에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국제법 위원회와 각 국 대표들은 한 개인이 어떤 국가로부터 국적을 부인 당한 경우 해당 국가에서 국적 청구 시 필요한 경제력과 전문 지식이 없으므로 국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 변론을 할 다른 국가가 있을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또한 국제 기구에 의한 대리는 개인이 국제법의 대상인지의 문제를 비껴갈 수 있게 해줌

니다. 게다가 이러한 일을 맡은 국제기구는 결국 관련된 개인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데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유효한 국적을 취득하고 무국적자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는 데에도 유용한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무국적자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1961년 협약은 체약국들이 국적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하여 규정된 기준을 반영하는 국적법을 채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체약국간에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고 다른 방법에 의하여는 해결될 수 없는 경우 분쟁 당사자 중 한 쪽의 요청에 따라 국제 사법재판소에 제출될 수 있습니다.

이 협약의 최종 의정서는 1954년 협약의 최종 의정서와 같이 가능한 모든 경우 사실상 무국적자가 이 협약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체약국에 촉구하는 권고를 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두 나라의 국경 사이에서 있었지만, 양 국가 중 어느 나라로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있었던 국가에 갈 수도 없었고 제가 태어나고 자라고 살았던 국가로 갈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어디에 속하는 것입니까? 저는 아직도 그 공항에서 느꼈던 극심한 상실감을 잊을 수 없습니다.”

과거 무국적자였던 첸

인권법은 어떻게 국적을 가질 권리를 보장하는가?

다른 다양한 국제법도 국적을 가질 권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1957년 **기혼 여성의 국적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Nationality of Married Women)**은 세계 인권 선언을 반영하여 국적을 가질 권리와 국적을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은 또한 “성별에 대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 대한 인권과 기본권의 보편적인 존중과 준수”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이 협약의 첫 세 조항은 부인의 국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1조는 “자국민과 외국인사이의 혼인의 성립이나 해소, 혼인 중 부의 국적 변경이 자동적으로 처의 국적에 영향 끼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2조는 “자국민의 타국 국적의 자발적인 취득이나 자국 국적 포기는 그 처의 그 국가 국적 보유를 방해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3조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체약국] 국민의 외국인 부인은 그녀의 요청에 따라 특별한 국적취득 절차를 통하여 남편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명시하며, “이러한 국적 인정은 국가 안보 또는 공공 정책의 이해에 따른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체약국은 본 협약이 “자국민의 외국인 부인이 그녀의 요청에 따라 당연한 권리로서 남편의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는 입법 조치나 사법 작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965년 **모든 형태의 인종 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 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은 당사국이 국적취득권을 포함한 기본적 인권(제5조)에 대하여 “인종, 피부색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구별없이 만인의 권리를 법 앞에 평등하게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966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24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어린이는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또는 출생과 상관없이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가족, 사회 및 국가에 대하여 미성년자로서의 지위로 인하여 요구되는 보호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어린이는 출생 후 즉시 등록되고, 성명을 가진다.”

“모든 어린이는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가진다.”

이 규약 또한 제26조에서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를 위하여 법률은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의 어떠한 이유에 의한 차별에 대해서도 모든 이에게 평등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979년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제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국은 여성이 국적을 취득, 변경 또는 보유함에 있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특히 외국인과의 결혼 또는 혼인 중 남편에 의한 국적의 변경으로 처의 국적이 자동적으로 변경되거나, 처가 무국적으로 되거나 또는 남편의 국적이 처에게 강제되지 아니하도록 확보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자녀의 국적에 관하여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여성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1989년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은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비준하였으며 국적과 관련하여 다음의 두 가지 중요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2조는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 안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7조는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 시부터 성명권과 국적 취득권을 가지며,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당사국은 이 분야의 국내법 및 관련 국제 문서 상의 의무에 따라 이러한 권리가 실행되도록 보장되어야 하며, 권리가 실행되지 아니하여 아동이 무국적으로 되는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1971년부터 수용소에서 살아왔습니다. 곧 자녀들과 수용소 밖에서 살림을 꾸리며 방글라데시 국민이 갖는 권리를 가지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삶의 존엄성이 없습니다. 나의 아이들은 수용소에서 제대로 커가고 있지 못합니다. 교육을 못 받고 있는데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한다면 앞으로 힘든 일만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살고 있는 무국적자 시에다하

국적을 가질 권리를 다루는 지역적 조약이 있는가?

지역적 법제는 국적을 가질 권리의 법적 기반을 강화시킵니다. 1969년 **미주 인권 협약(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의 제20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다른 국적을 가질 권리가 없는 경우, 모든 사람은 자신이 출생한 국가의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국적 또는 국적을 바꿀 권리를 임의로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이 원칙은 후에 미주인권재판소의 의견을 통하여 확인되었다. 미주인권재판소는 국적 부여의 요건이 국내 관할권 내에 있음을 확인하면서 또한 다음과 같이 평결하였습니다.

“국적의 부여 및 승인은 전통적으로 각 국가가 결정할 사항임이 인정되어왔지만 최근의 경향을 보면 국제법은 이 분야에서 국가가 향유하여온 광범위한 권한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고 국가가 국적과 관련된 사항을 규율하는 방법 또한 오늘날 그 관할권 내의 문제에 불과하다라고 만은 볼 수 없다.”(미주인권재판소, 권고적 의견, “코스타리카 헌법의 귀화 조항의 개정”(Amendments to the Naturalization Provision of the Constitution of Costa Rica), paragraphs 32-34, 5 HRLJ 1984.)

다시 말해서 국가는 국내의 국적 법령이 미칠 국제적 영향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합니다. 특히 이 법령의 적용이 무국적 상태를 초래할 경우에는 더욱 신중하여야 합니다.

1963년 유럽 전역에서는 **다국적자의 감소 및 다국적자의 병역 의무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eduction of cases of multiple nationality and on military obligations in cases of multiple nationality)**이 채택되었습니다. 이 협약은 당시 많은 서유럽 국가들에 의하여 받아들여졌던 개념, 즉 다국적자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방지되어

야 한다는 생각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1963년 협약의 범위가 다국적자의 문제로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국적에 관한 인식과 관행의 발전을 반영하기 위하여 1977년과 1993년 두 개의 의정서가 추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 협약의 제 2 의정서는 이민 2세대와 국제 결혼의 배우자와 그 자녀에게 다국적 취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1997년 **국적에 관한 유럽 협약(European Convention on Nationality)**은 유럽 회의(Council of Europe)가 마련한 또 하나의 지역적 법제입니다. 이는 국적법의 상충 문제를 다룬 1930년 헤이그 협약 이후 국적과 관련된 국내 및 국제법의 모든 발전을 통합시키는 단일한 문서를 만들 필요성에 의해 마련된 협약입니다. 이 협약은 1963년 협약을 수정한 것도 아니고 1963년 협약과 충돌하지도 아니합니다. 실제로 1997년 국적에 관한 협약은 결혼한 다른 국적을 가진 사람과 그의 자녀에게 다국적의 취득을 허용합니다. 하지만 이 협약은 또한 국적의 취득, 유지, 상실 및 회복의 문제, 절차적 권리와 국가 계승, 병역 의무 및 당사국 간의 협력의 맥락에서의 국적 문제도 다룹니다. 또한 이 협약은 무국적 상태를 방지하기 위한 많은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은 무국적자의 정의로 1954년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의 정의를 사용하여 오직 법적 무국적자만이 국적에 관한 유럽 협약의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국가 계승에 관한 유럽의 최근 경험은 많은 사람들이 다른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기존의 국적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무국적자가 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국가간 영토의 할양, 국가간 통일, 국가의 소멸, 영토의 분리 등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국가승계로 인한 무국적 상태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유럽국가들은 특별히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춘 국적에 관한 유럽협약의 의정서 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국가 승계와 관련된 무국적 상태의 방지를 위한 의정서 초안(Draft Protocol on the Avoidance of Statelessness in relation to State Succession)**은 국가승계의 경우 국적에 관한 구체적인 규범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의정서의 21개 조항은 승계국과 피승계국의 의무, 증거 법적, 출생 시의 무국적 상태 방지 및 무국적자의 국적 취득의 촉진 등의 문제에 대하여 실용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의정서는 2006년 초에 채택될 예정입니다.

1999년 아프리카 통일 기구(Organization of African Unity)[현재 아프리카 연합(African Union)]은 **아동의 권리 및 복지에 관한 아프리카 헌장(African Charter on the Rights and Welfare of the Child)**을 채택하였습니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모델로 삼은 이 헌장은 차별금지과 아동의 최상의 이익의 일차적 고려를 포함한 위 협약의 주요 원칙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6조는 성명과 국적을 다루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아동은 출생 시부터 성명권을 가진다.
- 모든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한다.
- 모든 아동은 국적 취득권을 가진다.
- 본 헌장의 당사국은 그 국가의 헌법 법규가 아동이 출생 시에 여타의 국가의 법에 의하여 국적이 부여되지 않을 경우 출생한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인정함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 2 장

무국적자의 확인 및 보호

각 국의 국적법과 1961년 무국적자의 감소에 관한 협약 및 기타 국제법을 통한 무국적자 감소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엔난민기구는 전 세계에 수 백만 명의 무국적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954년 유엔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은 누가 무국적자인지를 확인하고, 이들의 법적 신분 취득을 증진시키며, 무국적자가 차별 없이 기본권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우리는 정규적인 일을 가질 수 없고 이동할 수도 없습니다. 마치 항구가 없는 선박과 같은 신세입니다. 교육과 의료지원을 받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였고 대학교도 가지 못했습니다. 사설 병원만 갈 수 있고, 공공 병원에는 가지 못합니다.”

아랍 에미리트연합에서 살고 있는 무국적자 압둘라

누가 무국적자인가?

1954년 협약은 무국적자를 “어떠한 국가에 의하여도 그의 법률의 시행상 국민으로 간주되지 않은 자”라고 정의하고 있으며(제1조) 이는 순수한 법적 정의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국적의 성질, 국적부여의 방법, 국적에의 접근성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정의는 국가의 국적법령이 누가 국민인지를 그 규정에 따라(*ex lege*) 혹은 자동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을 단순히 적용한 것입니다.

이 정의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무국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즉 어떠한 관련국가와도 법적 유대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국적자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국가는 (그 사람의 출생, 과거 장기 거주지, 배우자 또는 자녀들의 국적국, 부모 또는 조부모의 국적국과 같은) 그 사람의 과거와 연관이 있는 국가의 관련 국적 법령을 검토하고, 이러한 국가와 협의하며, 필요한 경우 증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당사자에게 모든 관련 사실과 정보를 제공하는데 충분히 협조할 것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요청되는 바에 따라 국가 간 협의를 촉진하고 관련법 및 그 시행에 관한 기술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당해자가 국민이 아님을 증명하는 책임 있는 국가 당국의 서류는 일반적으로 무국적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신빙성이 있는 자료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거를 항상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출신국이나 과거 장기 거주국의 관련 당국이 국민이 아니라는 증빙 서류를 제공하지 않거나 아예 질의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 당국은 그 국가와 한 개인의 법적 유대 관계를 증명해야 할 책임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국가는 자국민에 대하여 외교적 보호를 확대할 것이기

때문에 한 국가가 당사자가 국민임을 확인해 주는 일을 거부한다면, 이 거부 자체가 하나의 증거로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1954년 협약의 규정으로부터 배제될 수 있는가?

1954년 협약의 전문은 무국적 난민이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의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1954년 협약에서는 다루어지지 아니함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무국적자의 정의와 더불어 1954년 협약 제1조는 무국적자 정의의 범위 안에 있으나 (따라서 무국적 상태인 것은 사실이나) 이미 특정한 법률 프로그램이나 국제적 지원을 받고 있거나 또는 과거의 범죄 행위 때문에 국제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등의 특정한 이유로 이 협약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람에 대하여도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 “현재 유엔난민기구 이외의 다른 유엔 기구 및 단체로부터 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자.”

현재 이 조항과 관련 있는 단체는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사업 기구(UNRWA) 가 유일한 단체입니다.

- “그들이 거주를 정한 국가의 관할 당국에 의하여 그 국민에게 부여되는 권리와 의무를 향유하는 것으로 인정된 자.”

이는 만약 무국적자가 어떤 국가의 법적 거주권을 취득하였고 특히 국민이 향유하는 것과 같은 완전한 경제적 및 사회적 권리 등 1954년 협약에 규정된 것보다 더 큰 권리를 부여 받았으며 강제퇴거와 추방으로부터 보호 받고 있다면 무국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 이 협약의 규정들을 적용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 “국제문서에 정의된 바에 따라 평화에 반하는 범죄, 전쟁 범죄 또는 인도에 반한 범죄를 범한 자;”

거주하는 국가에 입국하기 전, 당해국 외에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범한 자;

또는 유엔의 목적과 원칙에 위배되는 범죄 행위를 범한 자.”

언제 더 이상 무국적자가 아닌 것으로 간주되나요?

무국적자가 유효한 국적을 취득하면 더 이상 무국적자가 아닙니다.

2003년 12월 이디오피아와 2004년 11월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채택된 국적법은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유효한 국적이 없었던 많은 사람들의 상황을 궁극적으로 해결하는데 일조할 것입니다. 새로운 법안으로 이디오피아의 경우 자국 영토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디오피아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콩고민주공화국의 경우 그 국가의 국민을 확인하는데 기여합니다.

무국적자 결정에 사용되는 절차는 무엇인가?

1954년 협약은 무국적자를 정의하고 있지만 무국적자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상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각 국가가 무국적자를 확인하는 절차와 관련하여 지침을 제공하는 법령을 채택하는 것은 그 국가와 이 협약이 적용될 개인들의 이해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은 결정권자를 지정하고 무국적자로 판명된 경우, 발생하게 될 결과에 대해서도 규정하여야 합니다.

일부 국가들은 무국적자의 청구를 심사하고 판단할 정부 내의 특정 기관(예컨대, 비호, 난민 및 무국적자를 다루는 사무소, 또는 내무부)을 지정하는 이행 입법을 채택하였습니다. 무국적자의 인정 절차를 규정한 법령이 없는 다른 국가들은 무국적자를 결정하는 행정 또는 사법 기관을 설립하였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국가들이 아직 특별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 중 많은 경우에 난민 지위 결정 절차 중에 무국적자의 문제가 제기됩니다. 이 때에는 인도적 및 보완적 보호를 포함한 기존 체계 안에서 무국적자 문제가 “처리”됩니다. 사실상 무국적자는 난민 보호 체계 이외에는 별도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난민 지위 신청 절차를 통하여 그의 신청을 진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무국적자를 위한 인정 절차가 없는 국가에서는 거주 허가나 여행 증서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난민 신청이 거부당한 이후에 다른 이유로 그 국가에 거주하고자 하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 무국적자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무국적자에게 사법적 및 행정적 보호를 제공하는 난민 및 무국적자의 보호를 위한 프랑스 사무소(French Office for the Protection of Refugees and Stateless Persons, OFPRA)가 무국적 지위의 인정 절차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청자는 반드시 직접 이 사무소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스페인에서는 내무부가 왕령에 의하여 규율되는 절차를 통하여 무국적자의 지위를 인정한다고 외국인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자는 경찰서나 비호 및 난민 사무소(Office for Asylum and Refugees, OAR)에 가면 됩니다. 이 사무소는 조사를 한 후 내무부에 이유가 부기된 심사보고서를 전달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탈리아에서는 1992년 개정 국적법의 1993년 시행령에 의하여 내무부가 무국적자의 지위를 인정할 권한을 가집니다.

무국적자를 확인하는 별도의 절차가 없는 경우 미확인된 무국적자의 수를 판단할 수 없고 따라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어떠한 종류의 증거가 필요한가?

출생국 또는 최후의 여행 증명서를 발행한 국가인 “출신국”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으로부터 자신이 국민이 아니라는 증빙서류를 신청자 자신이 받아와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것이 항상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증빙서류를 갖출 수 없는 경우 일부 국가는 관련 국적법의 검토서, 증인 및 제3자의 진술서와 같은 다른 증빙 서류를 받기도 합니다. 정보를 수집하는 작업은 정부 내 다양한 부처 간, 그리고 국가 간 협력을 필요로 합니다.

현재 국가들 간에 무국적자 확인 (인정) 절차에 있어 통일된 접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가 간 무국적 상태의 증명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한 국가에서 무국적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다른 국가에서는 무국적자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005년 유엔난민기구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1954년 협약의 이해에 관한 보고서를 출간 하였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유럽연합 국가는 무국적자를 확인하고 인정하기 위한 절차를 아직 마련하지 아니하였으며, 대신에 난민인정절차가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럽연합 내에 무국적 문제의 심각성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유엔난민기구는 국가적 차원에서 가장 좋은 모범사례를 선정하여 유럽연합국가 간 무국적자 확인 및 인정 절차를 통일시키고 1954년 협약을 비준한 국가에게 지침을 제공하는데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어떤 개인이 무국적자임을 누가 결정하여야 하는가?

무국적 분야에 전문가이며 신청서 및 증빙 서류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자로서 자격을 갖춘 자가 무국적자를 결정하도록 임명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결정을 하나의 중앙 당국이 담당한다면 일관성을 부여하고 출신국에 대한 정보의 습득 및 공유를 더욱 원활히 할 수 있으며 특화된 경우 무국적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무국적자 지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법률, 명령, 규칙 및 다른 국가의 관행을 수집하고 분석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중앙 당국이 없더라도 의사 결정권자는 정부의 다른 부서나 다른 국가에서 국적법령과 무국적 문제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국적 신청 절차를 어떻게 밟을 수 있는가?

1954년 협약에 의하면 국가는 무국적 신청자에 그 심사기간 동안 합법적인 체류를 허가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특정 국가의 영토에 있는 경우 그의 국

적 상태를 결정하는 것이 그의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유일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만약 무국적자로 판명이 될 경우 그리고 이전에 장기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가능성이 없거나 그러한 국가가 없다면 현재의 국가에서 입국을 허가하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게 해주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국적자로 인정받기 위하여 신청을 한 경우 또는 당국이 어떤 사람이 무국적자인지 여부를 결정하고자 한다면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신청자에게 임시체류를 허용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협약은 무국적지위 인정신청이 심사되는 동안 법적 체류가 보장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별절차를 확립한 국가들의 관행은 각기 다릅니다.

적법 절차의 원칙에 의하여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보장을 받게 됩니다.

- 신청자가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신청을 개별적으로 심사 받을 권리
- 신청의 객관적 처리에 관한 권리
- 절차의 기한에 관한 권리
- 신청인이 이해하는 언어로 신청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 법적 자문 및 통역을 제공 받을 권리
- 비밀보장 및 자료 보호에 대한 권리
- 결정 및 결정 이유를 제공 받을 권리
- 결정의 합법성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

특히 **동반자가 없는 아동**처럼 무국적 지위 신청자 중 일부는 별도의 절차 조항이 요구되는 특별한 필요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정 절차 시 동반자가 없는 아동을 대리하거나 지원할 후견인의 임명과 관련된 조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각 국은 합법적 체류증이 없는 무국적자를 구금할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 무국적자를 구금하여서는 안됩니다. 무국적자의 경우 국내 신분증이나 여권 등과 같은 신분증빙서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전 거주국이 확인된 경우에도 그 국가가 즉시 재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명백하게 국제 인권법에 부합하는 국내법에 명백하게 기반을 둔 경우가 아니라면, 구금은 피하여야 합니다. 대안책이 관련 당사자에게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구금에 앞서 다른 대안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합법적 체류증이 없는 무적국자는 다른 모든 대안책을 고려한 이후에 구금되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구금을 결정할 경우, 당국은 구금이 합리적이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절한 것인지 결정하여야 합니다. 구금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도 최소한의 기간 동안 비차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요청이 있는 경우, 유엔난민기구는 자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임의 구금에 관한 실무 위원회

유엔인권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 Rights)는 1985년 이래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자의적 구금을 다루어왔습니다. 이 위원회는 차별 금지 및 소수 민족 보호에 관한 소위원회(Sub-Commission on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and Protection of Minorities)에 자의적 구금을 감소시키기 위한 제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동시에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들이 향유하여야 할 권리에 대한 우려는 1988년 12월 유엔총회에서 표명되었는데 ‘모든 형태의 억류, 구금 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 (Body of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under Any Form of Detention or Imprisonment)이 채택되었습니다. 1990년 위 소위원회 보고서의 제안에 따라 인권위원회는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 위원회(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를 설립하였습니다. 이 실무위원회는 보호와 구금에 관한 다음의 원칙을 채택하였습니다.

원칙 1

국경에서 심문을 위해 잡히거나, 불법적인 경로로 이미 다른 국가에 입국한 이주민과 비호신청인들에 대해서, 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들의 입국이 거부당한 사유, 혹은 임시 거주 허가가 허용되었다는 등의 결정을 직접 알려주어야 한다.

원칙 2

비호신청인이나 이주민은 구류에 처해진 기간에도 전화나,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 바깥 세상과의 연락을 취할 수 있어야 하며, 친척이나 상담자 또는 그들의 변호사와의 만남 또한 허용되어야 한다.

원칙 3

구금 조치에 있는 비호신청인은 신속히 사법당국이나 관계당국의 조사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원칙 4

구금에 처한 비호신청인과 이주민은 이들의 신원과 구금 조치에 취해진 근거, 이 조치를 결정한 관계당국, 구금이 시작되고 끝나는 날짜와 시간이 명시되어 있는 양식에 스스로 서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원칙 5

비호신청인에게 구금에 처한 동안 지켜야 할 내부 규정을 알려주어야 하며, 특히 독방에 감금될 수도 있는 특별 규정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원칙 6

구류 및 구금 결정은 법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 적절한 권위를 지닌 정부 기관에 의해 내려져야 한다.

원칙 7

보호의 최장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져야 하며 보호의 기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무제한이거나 과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칙 8

구금조치는 비호신청인이나 이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쓰여진 서류로 통보되어야 하며, 원할 경우, 사법 당국에 항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신속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해당인에 대한 석방이 고려되어야 한다.

원칙 9

비호신청인과 이주민에 대한 구금 조치는 반드시 일반 범 죄자들과 격리하여 취해져야 한다.

원칙 10

구금 시설에 대해 유엔난민기구, 국제 적십자 위원회 혹은 권위있는 비정부 기구의 방문이 허용되어야 한다.

무국적자로 인정된 사람의 권리와 의무는?

특정 관할 지역에서의 지위나 체류의 형태와 무관하게 고문 방지와 차별 금지의 원칙과 같은 기본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실제로 1954년 협약은 본 협약의 규정들이 “인종, 종교, 또는 출신국의 차별 없이” 무국적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제3조).

모든 무국적자는 그가 거주하는 국가에 대하여 그 법령에 따라야 할 의무를 집니다(제2조). 이 의무를 이행한다는 전제 아래, 협약 제7조 제1항은 무국적자에 부여된 기본적 보호 수준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협약이 더욱 적절한 규정을 둔 경우를 제외하고 “체약국은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것과 동등한 대우를 무국적자에게 허용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954년 협약에 열거된 대부분 권리와 관련하여 특히 유급 고용(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 교육(제22조), 주택(제21조), 이동의 자유(제26조) 등에 있어서 무국적자에게도 적어도 외국인에게 보장되는 권리와 이익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다른 권리, 특히 신앙의 자유(제4조), 예술상의 권리와 공업소유권(제14조), 재산권(제16조), 노동 법률과 사회 보장(제24조) 등에 대하여는 체약국이 국민과 대등한 대우를 자체 영토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무국적자에게 제공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무국적자로 확인된 자들은 신원 증명서와 여행 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가?

본 협약은 체약국이 유효한 여행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그 영토 내의 무국적자에게 신원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8조는 체약국이 합법적으로 자체 영토에 거주하고 있는 무국적자에게 국가의 안전과 공공 질서에 반하는 이유가 없는 한 여행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행 증명서를 발급하였다고 국적을 취득하거나 무국적자의 지위가 변하는 것은 아니며 외교적 보호의 이익을 받지 못합니다.

제28조의 두번째 부분은 당사국이 그 영토 내의 합법적인 거주자가 아닌 자를 포함한 모든 무국적자에게 여행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국은 그들의 합법적인 거주지 국가로부터 여행 증명서를 받지 못하는 그 영토 내의 무국적자에 대한 여행증명서의 발급에 관하여 고려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많은 무국적자들에게 합법적인 거주지 국가가 없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 조항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행 증명서는 무국적자의 확인을 가능하게 하고 적절한 국가에 무국적자가 입국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행 증명서는 특히 다른 국가로 공부하러, 일하러, 치료를 받으러 혹은 재정착하러 가는 무국적자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본 협약의 부속서에 따라 각 체약국은 다른 당사국이 발행한 여행 증명서를 유효하다고 인정하는데 동의합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이러한 서류의 발행에 대한 기술적 자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무국적자로 인정된 사람을 추방할 수 있는가?

본 협약에 따르면 합법적으로 체재하고 있는 무국적자는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에 반하는 이유 이외에는 추방되어서는 아니됩니다. 추방은 상당한 국가 안전 상의 이유가 다른 조치를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당한 법률 절차라는 안전장치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고소 고발을 당할 경우, 무국적자가 이에 대하여 소명 진실과 증거를 제시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며 상소할 권리가 확보되도록 절차상 보장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본 협약의 최종 의정서를 보면 강제 송환 금지의 원칙(non-refoulement)을 일반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이란 박해 받을 우려가 있는 영토로 송환을 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이며 이는 1951년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 제33조, 고문 및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혹은 굴욕적인 처우나 형벌 금지에 관한 협약 (고문방지협약) 제3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7조 및 기타 지역인권법 등 다수의 국제 조약들에서 명시적인 규정이 있거나 해석을 통하여 인정되고 있습니다.

강제송환의 금지가 국제법의 원칙으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법적 무국적의 지위를 다루는 본 협약의 규정들에서 굳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강제퇴거 결정이 내려진 경우, 본 협약에 의하면 당사국은 다른 국가로부터 입국을 허가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퇴거 대상자에게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국적자로 인정된 사람들은 어떠한 귀화 절차를 밟을 수 있는가?

협약당사국은 무국적자의 동화와 귀화를 최대한 촉진하도록 요청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화”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삶에 통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당사국들은 수수료나 비용을 가능한 한 절감하는 등 귀화절차를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부 국가는 국적법에서 귀화하기 원하는 난민이나 무국적자에게 단축된 합법적 거주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티모르는 인도네시아로부터 독립을 선언하여 인도네시아에 사는 모든 동티모르인은 인도네시아 시민권을 유지하거나 유효한 거주허가증과 함께 인도네시아에 외국인으로서 합법적으로 계속 살수 있도록 하는 동티모르 시민권 취득할 수 있습니다.

1997년 국적에 관한 유럽 협약은 영토 내에 합법적으로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국내법을 제정하도록 요청하여 위 제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또한 이 협약은 귀화신청을 할 권리를 갖기 위하여 필요한 거주기간을 10년 이하로 제한하였습니다. 이 협약은 당사국이 무국적자와 난민 인정자에 대하여 간이 귀화 절차의 적용을 고려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본 협약의 최종 의정서의 의의는?

본 최종의정서는 각 협약국으로 하여금 특정 국적국이 그 국민에 대한 보호를 부정하는 사유가 유효하다고 인정할 경우, 본 협약이 무국적자에게 부여하는 처우를 그 사람에게도 부여하는 가능성을 호의적으로 고려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권고는 엄밀히 말하여 아직 국적을 갖고 있으나 해당 국적국으로부터 보호와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실상 무국적자들을 위하여 규정되었습니다.

무국적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국적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처음부터 무국적 상태의 발생을 불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1961년 무국적자의 감소에 관한 협약과 각 국가가 무국적자를 감소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채택할 수 있는 관련 조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3장 참조).

그러나, 무국적 상태가 해결될 때까지는 무국적자로 인정된 사람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1954년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고 이를 이행하여 이행 입법을 채택함으로써 무국적자의 권리 및 의무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1954년 협약은 개인의 국적을 변경하거나 난민이 아닌 무국적자의 입국을 허용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1954년 협약을 적용하는 것과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가능하다면 국가들은 국적법과 그 집행을 통하여 영토 내에 거주하고 있는 무국적자의 동화 및 귀화를 촉진하여야 합니다. 이 방안을 현지 동화라고 합니다.

2005년 키르기스스탄 및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타지키스탄의 수많은 무국적 난민에게 비호국에서 자신들의 삶을 재건할 수 있도록 간이 국적 취득 절차를 보장하였습니다.

몇몇 예외적인 경우, 거주국에서 무국적자가 합법적인 지위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국가에 재정착하는 것이 적절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국가로 **재정착**하기 위한 기준은 무국적 상황(재정착은 주로 난민의 경우에 이용됩니다)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근 유엔난민기구 집행위원회는 무국적자를 포함하는 기준을 확대하도록 국가들에게 요청하였습니다. 그 집행 위원회 결정 제95호(2003년)에 따르면

“(집행위원회) 당사국들이 무국적 사례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관하여 유엔 난민기구와 협력하고, 현재 거주국 혹은 이전 장기 거주국에서의 무국적자 상황이 해결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위험에 처해 있을 경우, 재정착 장소를 제공하는 가능성을 고려하도록 촉구한다...”

유엔난민기구는 무국적자의 통합과 재정착에 관하여 자문과 지원을 당사국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3 장

무국적 발생 요인의 근절

무국적 상태는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국적의 주요 발생요인과 국가가 특히 국적법을 개정할 때 등에 이러한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실천적인 방안에 관하여 다음에서 논의합니다.

기술적 요인

법의 상충

한 국가의 국적법이 다른 국가의 국적법과 상충되어 어떤 개인이 양국 모두의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 국의 국적법은 적절하게 성안되었지만 양자가 함께 실행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태어난 A국에서는 혈통에 의해서만 국적을 부여하는 데(혈통주의, *jus sanguinis*) 그 부모가 모두 B국 국민인 반면, B국은 출생지에 기초하여서만 국적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속지주의, *jus soli*). 따라서 이 사람은 무국적자가 됩니다.

문제의 해결 방안:

- 1930년 헤이그 협약에 따르면 각 국가는 자국법에 따라 누가 자국민인지를 결정합니다. 다른 국가가 인정하는 이 법은 국제협약, 국제관습 및 국적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된 법의 원칙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국적법 관련 법의 상충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 국가는 국적법에 대한 최신의 자료를 보유하고 이 법들의 현실에서의 실행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 1961년 무국적자의 감소에 관한 협약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국적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국 영토에서 출생한 자에게 법률의 적용에 의하여, 출생한 때;
 - 자국 영토에서 출생한 자에게 국내법의 조건에 따른 법률의 적용에 의하여, 일정 나이에 도달한 때;
 - 자국 영토에서 출생한 자에게, 신청한 때(신청은 일정한 신청 기간, 특정 거주 요건, 특정 성격의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을 것, 이제까지 무국적자였을 것 등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충족을 전제로 할 수 있음);
 - 유효한 국적을 가진 모의 국적국에서 출생한 어린이에게, 출생한 때;
 - 나이 제한이나 주거 요건 등의 이유로 출생국인 체약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없는 자에게, 혈통에 의하여(일정한 신청 기간, 특정 거주 요건, 특정 성격의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을 것, 이제까지 무국적자였을 것 등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충족을 전제로 할 수 있음);

- 체약국의 영토 내에서 발견된 기아에게;
 -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지만 출생할 당시 부모 중 어느 일방이 체약국의 국적을 가진 자에게 법률의 적용에 의하여, 출생한 때;
 - 출생할 당시 부모 중 어느 일방이 체약국의 국적을 가진 자에게, 국내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때 (신청은 일정한 신청 기간, 특정 거주 요건, 국가안보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을 것, 이제까지 무국적자였을 것 등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충족을 전제로 할 수 있음).
- 대부분 국가들은 국민의 구성과 출생 시의 국적 부여를 결정하는 국적법에 출생지주의와 혈통주의의 원칙을 결합시킵니다. 이중 국적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는 특정 나이가 되면 개인 혹은 그 개인의 부모가 둘 중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국적 포기 관련 법의 상충

일부 국가의 국적법은 다른 국적을 취득하거나 취득을 보장받기 이전에 국적의 포기를 가능케 하기 때문에 종종 무국적 상태가 발생합니다. 한 국가가 다른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는 그 국적을 포기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국가가 기존 국적을 포기한 후에만 그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이 문제에 관한 법의 상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추정되는 다른 국적을 포기하여야만 거주국의 국적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국적을 취득하기 이전까지는 무국적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 해결 방안

- 1961년 협약에 따르면 국적의 상실이나 포기는 다른 국적을 취득한 후 혹은 그 취득을 보장받은 후에만 가능합니다. 단 귀화한 자 중 절차 및 시한에 대한 통지를 받았지만 일정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며 국적 유지 의사를 피력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러한 경우, 그 귀화한 사람은 관련 체약국에 국적을 신청하여 취득하였지만 그 체약국이 신청을 거부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국적의 상실은 법에 따라, 그리고 법원 혹은 다른 독립된 기관에 의하여 공정한 심리를 받을 권리 등 모든 절차적 보장을 받은 상태에서 처리되어야 합니다.
- 국적법은 다른 국적을 취득하거나 관련 당국으로부터 국적 취득을 보장하는 공문을 받지 아니한 채 자신의 국적을 포기할 수 없음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일부 국가는 다른 국적을 상실하거나 취득하지 못할 경우 자신의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 이중 혹은 다중 국적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국가의 국적법은 국적의 포기나 상실 가능성이 아니하다면 자국 국적 취득을 위한 다른 국가의 국적의 포기나 상실이라는 전제 조건을 요구하여서는 안됩니다. 일례로 난민에게 국적을 포기하기 위하여 출신 국으로 돌아가거나 그 당국을 접촉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안됩니다.

모범사례: 우크라이나

1944년 20만 명 이상의 크림리아 타타르인들은 나찌 점령군에 협력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크림리아에서 소련연방의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추방되었습니다. 대부분 우즈벡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추방되었습니다. 20년 후 소련연방의 최고 소비에트 회의는 크림리아 타타르인들이 받은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선언하며 타타르인들이 크림리아 반도를 포함하여 소련 연방의 어느 지역에서든지 살 수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크림리아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타타르인들은 등록, 고용, 토지와 주택의 접근권을 취득하는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1987년 소련 각료 회의는 크림리아 반도 중 여덟 개 내륙지역으로만 크림리아 타타르인들이 귀환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기쁘고 개발된 남쪽 해안의 고향으로 귀환하는 것을 막는 결의를 채택하였습니다. 2년 후 최고 소비에트 회의는 이러한 “강제 추방된 자들”의 권리를 부정한 조치는 “불법적이며 범죄행위”라고 선언하였으며 그 후 크림리아로 대규모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1991년 12월 소련 연방이 해체된 이후, 국경 및 국적 등과 같은 국가 승계에 따른 복잡한 정치적, 법적 문제가 갑자기 대두되었습니다.

현재 크림리아의 영토가 속한 우크라이나는 이전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의 승계국이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최초의 국적법(1991년)에 의하면 1991년 8월 24일 독립이 선언된 당시 소련의 국민으로 우크라이나 영토에 영주하고 있던 자는 출신, 사회적 지위, 인종, 국적, 성별, 교육, 언어정치적 의견 또는 종교와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법률에 의해 우크라이나의 국민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국적을 자동 취득하지 못하는 조건은 다른 국가의 국민으로 우크라이나의 국민이 되지 아니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독립부터 3개월 후 국적법의 발효 시까지의 기간에 우크라이나에서 법적 거주를 등록한 자들도 자동적으로 우크라이나 시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약 15만 명의 크림리아 타타르인들이 이러한 조항에 힘입어 우크라이나 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1991년 11월 국적법의 시행 이후, 우크라이나로 입국한 10만 8천 명으로 추정되는 크림리아 타타르인들은 우크라이나 국적을 취득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약 28,000명은 다른 국가에서 국적법이 발효되기 전에 그 국가에서의 영주 지위를 취소하여 법적 무국적자가 되었습니다. 이전 거주국의 국적법이 실행될 때 그 국가에 등록되어 있던 또 다른 8만여 명은 그 국가의 법적 국민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자동적으로 우크라이나 국적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적 귀화 절차에 따라 우크라이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지만, 대부분의 귀환자들은 5년 간 우크라이나 내의 거주, 충분한 소득, 우크라이나어의 사용을 포함한 엄격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습니다.

유엔난민기구,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와 유럽회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크라이나 정부에게 국적법을 개정하도록 독려했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우크라이나 여권 및 귀화국에 교육 및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였으며 국적에 관한 언론 캠페인을 조직하였습니다. 유엔난민기구의 감독 아래, 현지 비정부단체들은 우크라이나 국적 신청자들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였으며 우크라이나 당국과의 법적 절차에서 이들을 대표하였습니다.

무국적 상태를 감소하고 궁극적으로는 방지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의회는 유엔난민기구와의 협의 아래 국적법을 10년 동안 7번이나 개정하였습니다. 1997년 5월 신청자들에게 대한 언어와 소득 요건이 제거 되었으며 과거에 추방된 자의 후손은 조상이 크리미아 지역 출신이라는 근거로 우크라이나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개정으로 인하여 약 28,000명의 법적 무국적 귀환자는 마침내 우크라이나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개정이 개별 무국적자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히 기여를 하였지만 헌법 상 이중 국적의 금지와 같이 우크라이나 국적을 취득하는데 있어 장애물은 여전히 존재하였습니다. 이미 우즈베키스탄의 법적 국민이 된 귀환자가 크리미아로 돌아갈 경우 우크라이나의 국적을 취득하기 위하여서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을 정식으로 포기하여야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즈베키스탄 국적을 포기하기 위하여서는 미화 100달러를 지불하고 키예프에 있는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을 방문하여야 하였고 그 행정 절차는 종종 1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유엔난민기구와 유럽안보협력기구는 양국의 협상을 중재하여 국적 변경을 간소화하는 1998년 양자 협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포기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합의 하였고 우크라이나 내무부의 현지 여권 부서에서 포기신청서를 접수하여 우즈베키스탄 당국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유엔난민기구가 제기한 우려에 따라 이 과정에서 무국적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포기과 우크라이나 국적의 취득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장하는 행정 정책이 채택되었습니다.

이 양자 협약이 시행된 3년간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약 80,000명의 귀환자가 우크라이나 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우크라이나는 유사한 양자 협약을 벨로루시(1999년), 카자흐스탄(2000년) 타지키스탄 (2001년)과 키르기스스탄(2003년)과 맺었습니다..

2001년 1월, 우크라이나 의회는 무국적자의 발생을 더욱 강력하게 방지하는 새로운 국적법을 채택하였습니다. 2005년에 개정된 이 법과 다른 규정들에 따르면 신청자는 우크라이나 국적을 취득한 후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고, 포기 수수료가 우크라이나의 최저 월임금 이상이면 면제됩니다.

아동과 관련된 법과 관행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과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르면 모든 아동은 출생지와 상관없이 태어나자마자 출생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어린이에게는 국적 취득권이 있습니다.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아동의 국적이 결정됩니다. 아동의 출생지 및 부모에 대한 분명한 정보를 국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확인된 출생 등록과 같은 출생의 증명없이 아동의 신분을 확립할 수 없어 국적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문제 해결 방안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7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4조에 따른 출생등록의 체계적 실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 국가는 관련 지방 행정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필요할 경우 유엔아동기금(UNICEF)과 같은 국제 사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출생 등록을 할 경우 국가는 논란이 있는 국적에 대한 사례를 확인하며 아동이 무국적자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국적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1961년 무국적자의 감소에 관한 협약에 가입한 후에는 국가는 그 협약 관련 규정들을 국내법에 결합시켜야 합니다. 1961년 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한 국가들도 이 규정들을 국내법에 포함시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 아동이 출생국의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국적 조항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 출생 시 아동의 국적을 결정하는데 잘못이 발생하는 경우 무국적 상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혼외 출생자의 경우 가능한 한 국내법에 따라 적출의 아동과 동등하게 출생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자녀의 출생지가 어머니의 국적국인 경우에도 아버지가 무국적자인 경우 많은 국가들에서 **여성들은 자신의 국적을 아동에게 물려주지 못합니다.** 이러한 경우 그 아동은 무국적자가 됩니다.

문제 해결 방안

- 1957년 기혼 여성의 국적에 관한 협약 및 1979년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에 따라 여성은 자신의 자녀의 국적에 대하여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아버지가 무국적자인 경우 자녀 역시 무국적자가 되는 가능성을 피하기 위하여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 각 국가는 그 국적법에 성별에 의한 차별 금지 조항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고아 및 기아는 확정된 국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외자 또한 국적을 취득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 방안

- 국가의 영토 내에서 발견된 기아에게는 그 국가의 국적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 원칙은 많은 국가의 국적법과 국적 관련 국제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아동의 국적을 결정할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항상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양자가 양부모의 국적을 취득할 수 없는 등 일부 국가의 **입양** 관행은 무국적 상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 방안

- 각 국가는 국제법에 따라 해외에서 이루어진 입양도 국내법에서 인정됨을 보장하는 법규정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1967년 입양에 관한 유럽협약(European Convention on the Adoption of Children)은 국가로 하여금 국민이 입양한 아동의 국적 취득을 원활하게 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행정 관행

국적 취득, 회복 및 상실에 대한 수 많은 행정적 및 절차적 문제가 있습니다.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도—실제로 국적 신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도—과도한 행정 수수료, 지킬 수 없는 기한, 과거 국적국의 보유로 인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없는 상황 등이 모두 개인의 국적 취득을 불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 방안

- 국적 취득, 유지, 상실, 회복 또는 확인 관련 신청이 적절한 기간 내에 처리되어야 합니다.
- 비록 각 국가는 일반적으로 국적에 관한 모든 결정의 서면 기록을 보관하도록 권장되지만, 국가 승계의 상황에서의 장기 합법 거주자들의 경우를 포함하여 국적의 자동적 (법적) 취득이나 상실의 등록은 서면 진술서를 요구하여서는 안됩니다.
- 국적의 취득, 유지, 상실, 회복 또는 확인과 관련 행정 및 사법 심사를 위한 수수료는 적절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여성과 관련된 법과 관행

일부 국가는 여성이 국민이 아닌 사람과 결혼한 경우, 여성의 국적을 자동적으로 변경시

킵니다. 이 경우 그 여성이 남편의 국적을 자동 취득하지 아니하거나 남편이 국적이 없는 경우 여성은 무국적자가 됩니다.

남편의 국적을 취득한 이후에 결혼이 해소되고 결혼을 통해 취득한 국적을 상실하였지만, 원래 국적은 자동적으로 회복되지 않는 경우에도 여성은 무국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 방안

- 1957년 기혼 여성의 국적에 관한 협약 및 1979년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은 국적의 취득, 변경 또는 유지와 관련하여 여성에 대해 남성과 동등한 권리의 보장을 추구합니다. 이 협약들에 포함된 원칙들에 비추어, 남편의 국적으로 인하여 아내의 국적이 자동적으로 변경되거나, 무국적자로 되거나, 남편의 국적을 의무적으로 따르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권리가 없고, 결혼할 경우 자동적으로 국적이 상실되는 국가나 여성이 결혼할 때 자신의 이전 국적을 포기하여야 하는 국가의 경우, 결혼이 해소될 경우 간단한 선언을 통하여 결혼 이전 국적을 자동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이들 국가의 국적법에 마련되어야 합니다.

국적의 자동 상실

일부 국가는 그 국가를 떠난 자나 해외 거주자의 국적을 자동적으로 박탈합니다. 개인의 출국 후 몇 개월도 되지 아니하여 국적이 상실되는 경우는 그 사람에게 정기적으로 당국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국적을 상실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대로 통보하지 아니한 문제 있는 행정 관행과 관련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그 당사자가 그 국가에서 출생하거나 혈통에 의해 국적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귀화한 자일 경우에는 정기적인 등록을 하더라도 국적 박탈 방지를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경우 무국적자의 발생은 이러한 관행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문제 해결 방안

- 1961년 무국적자의 감소에 관한 협약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출국, 해외 거주, 등록 불이행, 기타 유사한 이유로 국적을 상실하여 무국적자가 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이 협약은 7년 이상 계속하여 해외에 거주한 귀화자는 예외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관계 기관에 그의 국적 보유 의사를 명백히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각 국가는 이러한 정책에 대하여 영사관을 통하여 국내외의 귀화자에게 적절하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국적에 관한 유럽협약 등과 같은 최근 법제에서는 당사국이 개인의 장기간의 해외거주를 이유로 국적을 박탈하여 그 개인을 무국적자가 되도록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합니다.

국가 승계와 관련된 요인

영토 혹은 주권의 이양

특정한 국제법과 원칙에서 부분적으로만 다루어지고 있지만 영토나 주권의 이양으로 인하여 오래 전부터 무국적자가 발생되어왔습니다. 식민지 통치로부터의 독립, 국가의 해체, 국가해체 후의 승계 혹은 회복 등 중요한 영토 혹은 주권의 중대한 변화는 불가피하게 국내법과 관행의 변화를 초래합니다. 즉 위와 같은 변화는 새로운 국적법령이나 행정절차의 채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법령이나 행정절차에 따라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이전의 관련법과 관행의 해석이 바뀌어 국적이 부인되는 경우 무국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 방안

- 1961년 무국적자의 감소에 관한 협약 제10조는 당사국은 영토 이양의 결과 무국적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국가는 그러한 이양으로 인하여 무국적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양자 혹은 다자 조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만약 조약이 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각 국가는 무국적자가 될 소지가 있는 자에게는 국적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 실제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영토와 연관되어 있지만 일부 국제 조약, 헌법 규정과 국제법은 승계국 가운데 국적을 선택할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 승계 조약이 국가의 해체 또는 분리가 국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규정을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 국가 승계와 관련된 국적에 관한 국제법을 성문화하고 개발하기 위한 필요에 의하여 이 주제에 대한 규정의 초안을 유엔 국제법위원회(ILC)가 마련하여 2001년 유엔 총회 결의 55/153의 부속서에 포함시켰습니다. 위 규정의 초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관련 국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국가의 승계일에 선행국의 국적을 소지하였던 사람들이 국가 승계로 인하여 무국적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승계에 영향을 받는 영토 내에 장기 체류하고 있었던 사람은 승계일에 승계국가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승계국은 무국적자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국가에 장기 체류한 자에게 당사자의 의지에 반해서 국적을 부여하여서는 안됩니다.
 - 두 개 이상의 국가의 국적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가 있다면 관련 국가는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관련 국가는 당사자가 무국적자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경우 그 국가와 적절한 연관이 있는 자에게 그 국가의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 관련 국가는 어떠한 근거에 의한 차별을 통하여서도 당사자의 국적을 유지 또는 취득할 권리 또는 국적 선택권을 부인하여서는 안됩니다.

• **국적에 관한 유럽협약과 국가 승계와 관련된 무국적자의 방지에 관한 의정서 (Protocol on the Avoidance of Statelessness in relation to State Succession)** 초안은 1961년 협약의 규정과 유엔국제법위원회의 규정 초안에 담긴 원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적에 관한 유럽협약은 국가승계와 국적에 관한 장에 다음 네 가지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당사자와 국가간의 진정하고 유효한 연관
- 승계시 당사자의 장기 체류지
- 당사자의 의지
- 당사자의 출신지

또한 국적에 관한 유럽협약은 선행국의 국민이 아니고 주권이 승계국으로 이전되는 영토의 장기 거주자이며 승계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가 그 국가에 계속 거주할 권리가 있고 내국민과 동등한 사회적 및 경제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가 승계와 관련된 무국적자의 방지에 관한 의정서 초안은 국가 승계시의 국적과 관련된 증명 법칙(제8조)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승계국은 승계로 인하여 당사자가 무국적자가 되었거나, 될 소지가 있고 표준 요건의 충족을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한 경우에 국적 부여에 필요한 표준적인 증명 요건을 강요하지 아니한다.

승계국은 승계시 그 영토에 장기 체류하고 있었으며 국가 승계로 인하여 무국적자가 되었거나 될 소지가 있는 자에게 국적을 부여하기 이전 다른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하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제8조 1항은 개인이 국적 취득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표준적인 증명 요건을 완비하기는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합니다. 예컨대, 신분 등록 관련 자료가 소실된 경우에는 혈통에 대한 완전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거주지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거주지를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또한 증거를 제출하면 당사자의 생명이나 건강이 위협 받는 등 당사자가 증거를 제출할 수는 있으나 증거 제출의 요청이 비합리적인 경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증거 제출이 어려운 상황이 반드시 국가 승계와 직접 관련이 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선행국의 통치 시기에 신분 등록 관련 자료가 소실되었거나 일부 거주자의 주요 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등 승계일 이전이나 이후에 일어난 사건에 의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경우, 높은 개인성이 있는 증거 그리고/또는 독립된 증언을 제출하는 것으로 승계국의 국적 취득 요건의 완비는 충족됩니다.

제8조 2항은 선행국이 사라지고, 이로 인해 선행국의 국적을 가진 자 모두가 국가 해체의 자동적인 결과로서 국적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만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승계국이 다중 국적을 방지하거나 감소시키고자 한다면 그 국가는 당사자에게 다른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였거나 무국적자임을 증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무국적자임을 증명하는 것은 다른 국가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 승계로 인하여 무국적자가 될 소지가 있는 경우 승계국은 당사자에게 국적을 부여하기 이전에 다른 국적이 없거나 무국적자임을 증명하라고 요청하여서는 안됩니다. 이 원칙은 무국적 상태의 방지를 국제 사회가 우선시하며 다중 국적의 수용 혹은 부인은 각 개별 국가의 결정에 의한다는 지배적인 관점을 따른 것입니다.

이러한 조항은 국가가 자체 영토 내의 다중 국적자의 수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다른 국가와 협조하고 국적의 취득과 상실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합니다. 1930년 국적법의 상충에 관한 헤이그 협약의 다른 국적의 불인정에 관한 조항 및 위 유럽협약의 제7조 제1항 a목의 자발적으로 다른 국적 취득시 자동적인 국적 상실을 명시한 조항 등을 통하여 다중 국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국가는 또한 당사자에게 다른 국적을 소지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취득하지 아니할 것임을 서면으로 선언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로써 추후에 당사자가 허위 선언을 한 것이 밝혀지면 그 국적을 박탈할 수 있게 됩니다.

모범사례: 체코 공화국

1993년 1월 1일 구 체코슬로바키아가 공식적으로 해체되었을 때 승계국인 체코 공화국과 슬로바키아 공화국은 각각 그 국가의 국민의 정의와 국적 취득 절차를 규정한 새로운 국적법을 채택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개의 법 모두 1969년에 마련된 체코슬로바키아 국적법에 기초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현실에 적용될 수가 없었습니다.

두 개의 신생 국가의 내부 국적법에 의하면 1954년 이전 출생자, 즉 체코슬로바키아 사회주의 공화국이 두 개의 공화국으로 구성된 연방 국가가 되었을 때 15살 이상이었던 자는 출생한 영토의 국적을 가지도록 하였습니다(출생지주의). 1954년 이후 출생자는 출생지주의(체코와 슬로바키아의 국적이 섞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는 일반적으로 출생한 곳의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에 의하여 혹은 부모가 동일한 국가의 국적을 가진 경우 부모의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였습니다(혈통주의). 그 결과 체코 공화국에서 전 생애를 산 많은 사람들이 슬로바키아 국적을 받게 되었고 슬로바키아 공화국에서 전 생애를 살아온 많은 사람들이 체코 국적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체코 공화국에서 사는 소수 종족인 집시들은 대부분 슬로바키아 영토에서 태어났거나 슬로바키아 혈통을 지녔기 때문에 이 법적 회색 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신설된 슬로바키아 국적법은 이전 체코슬로바키아의 국민에게 무제한적으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신설된 체코 국적법은 체코 국적 취득의 엄격한 조건을 명시하였습니다. 체코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각 개인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연방의 해체 최소 2년 전부터 체코 공화국 영토 내에서 계속적 장기 체류를 유지하며 등록하여야 한다.
- 슬로바키아 국적 취득의 제외 대상이어야 한다.
- 지난 5년간 고의적인 범죄로 형을 받은 자가 아니어야 한다.

1990년 중반, 체코 및 슬로바키아 정부는 법의 상충으로 발생된 수 천 명의 무국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유엔난민기구의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그 지역에 두 개의 실태 조사팀을 파견하고 국적법에 대하여 각 정부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1996년, 유엔난민기구는 프라하에 국적 자문 센터의 설립을 도모하였습니다. 이 센터는 체코 공화국과 장기적이고 진정한 연관을 가졌지만 무국적자가 된 과거 체코슬로바키아 국민들에게 법적 및 사회적 상담을 제공합니다.

이후 일 년 동안 체코 감옥에 구금되었던 3,500 명과 국적을 결정하거나 행사할 수 없었던 2,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유엔난민기구와 유럽회의의 자문에 따라 체코 정부는 국적 취득에 대한 제한을 완화시키기 시작하였습니다. 1996년 4월 체코 입법부는 국적법을 개정하여 신청자가 체코 공화국에 계속적으로 거주하였고 그 거주 의 공식 증거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내무부가 자체 재량에 따라 신청자에게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1999년 체코 입법부는 다시 법 개정을 통하여 이전 체코슬로바키아의 국민으로 체코 공화국의 영토가 된 지역에서 영주하였으나 공식 거주 허가증이 없는 자들도 체코 공화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법에 의하면 직업, 주택계약, 증인 중 한 가지 이상으로 거주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도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엔난민기구, 비정부단체 및 체코 공화국의 공동 노력으로 과거 체코슬로바키아의 시민으로서 연방의 해체 이전에 체코 공화국에서 영주한 자들에게는 점진적으로 체코 공화국의 국적에 대한 무제한적 접근이 보장되었습니다.

국적의 차별 또는 자의적 박탈과 관련된 요인

차별

국가의 국적 부여 혹은 부인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원칙 중 하나는 인종 차별의 금지입니다. 이 원칙은 모든 형태의 인종 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 협약과 다른 많은 법제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2004년 10월 1일 비시민의 차별에 대한 일반 권고에서 인종 차별 철폐를 위한 유엔위원회는 “인종, 피부색, 혈통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근거하여 국적을 박탈하는 것은 국적을 가질 권리의 비차별적인 향유를 보장하여야 하는 국가의 의무에 반하는 것이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국가와 깊은 연관을 보유하며 다른 사람은 이와 같은 연관성으로 국적을 충분히 취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종, 피부색, 종족, 종교, 성별, 정치적 의견 또는 그 밖의 다른 요소에 근거한 차별은 법 그 자체나 그 실행을 통하여 명백하여지거나 의도하지 않았으나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편견을 지닌 언어를 사용하였거나 법 실행의 결과 차별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그 법은 차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 방안

- 헌법 및 국적 관련법에 국적에 관한 비차별 원칙이 반영되도록 보장하며 행정적 및 사법적 결정을 통하여 이 원칙의 실행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 각 국가는 국내적으로, 그리고 다른 국가와 협력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채택하여 모든 아동이 출생시 국적을 보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적출자, 혼외자 및 무국적자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아동 모두 국제법 상 동등한 국적을 가질 권리를 보유합니다.
- 1957년 결혼한 여성의 국적에 관한 협약 및 1979년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은 국적을 취득, 변경 및 보유하는데 모든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위 협약의 원칙에 따라 남편의 국적으로 인하여 아내의 국적이 자동적으로 변경되거나, 무국적자가 되거나, 남편 국적의 취득이 의무화 되서는 안됩니다.

국적의 박탈 및 부인

세계인권선언은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국적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961년 협약 및 1997년 국적에 관한 유럽 협약은 각 국가가 시민권을 박탈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그러한 국적의 상실은 일체의 절차적 보장 하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무국적자가 발생되어서는 안됩니다. 국적의 박탈이란 한 국가가 개인의 국적을 빼앗는 것을 의미하며 대체로 그 국가가 차별적 관행을 실행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일반적으로 국적이 박탈되면 당사자는 추방됩니다.

문제 해결 방안

- 국제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 국적의 박탈이 무국적 상태를 초래할 경우 국적이 박탈되어서는 안됩니다.
- 1961년 무국적자의 감소에 관한 협약은 다음과 같은 위 원칙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 허위 진술 또는 사기로 취득한 국적인 경우.
 - 해외거주로 국적이 상실된 경우(위의 내용 참조).
 - 체약국에 대한 충성의무와 모순되게 체약국의 명시적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타국에 역무를 제공하였거나 체약국의 중대한 이익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행동을 한 경우(협약에 서명할 당시 기존의 국내법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 타국에 대한 충성을 선서 혹은 공식 선언하였거나, 체약국에 대한 충성을 거부한 경우 (협약에 서명할 당시 기존의 국내법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1961년 협약의 체약국인 경우, 서명, 비준 또는 가입 시에 국내법에 명시되어 있었고, 법률에 의하며, 공정한 심리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 모든 절차적 보장 하에 이루어질 경우에만 위 이유로 국적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체약국은 인종적, 민족적, 종교적 또는 정치적 이유로 어느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하여 그들의 국적을 박탈시킬 수 없습니다.

1997년 국적에 관한 유럽 협약은 무국적자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국가의 국적 박탈을 더욱 강력하게 제한합니다. 이 협약에 따르면 국적의 박탈은 사기나 허위진술로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한해서만 정당화됩니다. 하지만 국적 박탈로 인하여 무국적자가 되지 아니한다면 다음의 이유로 국적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 다른 국적의 자발적 취득
- 외국 군예의 자발적 지원
-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행동
- 국가와 장기 해외 거주 국민 간의 진정한 연관의 부족
- 국내법에 따라 국적을 자동 취득할 수 있는 선행 조건의 미비(미성년자에게만 해당됨)
- 입양아의 입양 부모 중 한 명 이상의 외국 국적의 취득 또는 보유.

1961년 유엔 무국적자의 감소에 관한 협약의 주요 규정

국적의 부여와 관련된 조항 (제1조, 제2조, 제3조 및 제4조)

무국적자가 될 소지가 있는 경우 출생 혹은 혈통을 통하여 유효한 연관이 있는 국가는 국적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에 국적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 자국 영토에서 출생한 자에게 법률의 적용에 의하여, 출생한 때;
- 자국 영토에서 출생한 자에게 국내법의 조건에 따른 법률의 적용에 의하여, 일정 나이에 도달한 때;
- 자국 영토에서 출생한 자에게, 신청한 때(신청은 일정한 신청 기간, 특정 거주 요건, 특정 성격의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을 것, 이제까지 무국적자였을 것 등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충족을 전제로 할 수 있음);
- 유효한 국적을 가진 모의 국적국에서 출생한 어린이에게, 출생한 때;
- 나이 제한이나 주거 요건 등의 이유로 출생국인 체약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없는 자에게, 혈통에 의하여(일정한 신청 기간, 특정 거주 요건, 특정 성격의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을 것, 이제까지 무국적자였을 것 등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충족을 전제로 할 수 있음);
- 체약국의 영토 내에서 발견된 기아에게;
-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지만 출생할 당시 부모 중 어느 일방이 체약국의 국적을 가진 자에게, 법률의 적용에 의하여 출생한 때;
- 출생할 당시 부모 중 어느 일방이 체약국의 국적을 가진 자에게, 국내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때 (신청은 일정한 신청 기간, 특정 거주 요건, 국가안보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을 것, 이제까지 무국적자였을 것 등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충족을 전제로 할 수 있음).

국적의 상실 혹은 포기과 관련된 조항 (제5조, 제6조 및 제7조)

국적의 상실이나 포기는 다른 국적을 취득한 후 혹은 그 취득을 보장받은 후에만 가능합니다. 단 귀화한 자 중 절차 및 시한에 대한 통지를 받았지만 일정 해수 동안 해외에 체류하며 국적 유지 의사를 피력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러한 경우, 그 귀화한 사람은 관련 체약국에 국적을 신청하여 취득하였지만 그 체약국이 신청을 거부

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국적의 상실은 법에 따라, 그리고 법원 혹은 다른 독립된 기관에 의하여 공정한 심리를 받을 권리 등 모든 절차적 보장을 받은 상태에서 처리되어야 합니다.

국적의 박탈과 관련된 조항 (제8조 및 제9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적 박탈로 무국적자가 될 경우, 그 국적이 박탈되어서는 안됩니다.

- 허위 진술 또는 사기로 취득한 국적인 경우;
- 체약국에 대한 충성 의무와 모순되게 체약국의 명시적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타국에 역무를 제공하였거나 체약국의 중대한 이익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행동을 한 경우;
- 타국에 대한 충성을 선서 혹은 공식 선언하였거나, 체약국에 대한 충성을 거부한 경우;
- 귀화자가 체약국과의 유효한 연관을 상실하고 통지에도 불구하고 국적 보유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체약국인 경우, 서명, 비준 또는 가입시에 국내법에 명시되어 있었고, 법률에 의하며, 공정한 심리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 모든 절차적 보장 하에 이루어질 경우에만 위 이유로 국적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체약국은 인종적, 민족적, 종교적 또는 정치적 이유로 어느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하여 그들의 국적을 박탈시킬 수 없습니다.

영토의 이양과 관련된 조항 (제10조)

조약은 영토 이양의 결과로 무국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만약 조약이 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각 국가는 영토의 이전 혹은 획득으로 인하여 무국적자가 될 소지가 있는 자에게는 국적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국제 기구와 관련된 조항 (제11조)

이 협약은 유엔 내에 이 협약상의 이익을 주장하는 자가 자신의 청구의 심사를 신청하고 담당 기관에 대한 청구 제출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의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엔총회는 유엔난민기구에 이 임무를 맡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분쟁의 해결과 관련된 조항 (제14조)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다른 방법에 의하여는 해결될 수 없는 체약국간의 분쟁은 당사자의 어느 일방의 요청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출됩니다.

최종의정서

최종의정서는 '사실상 무국적자'도 가능한 최대한 '법적 무국적자'의 대우를 받아 유효한 국적을 취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제 4 장

유엔난민기구의 역할

유엔난민기구는 1950년 창립 초기부터 무국적자 문제에 대처하여 왔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난민들을 보호하고 난민이 봉착한 문제에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유엔으로부터 위임을 받았습니다. 유엔난민기구가 수 십년간 지원한 난민의 상당수는 무국적자였습니다. 실제로 지난 수 십년간 국가 보호의 상실 및 포기과 국적의 상실 및 포기 사이의 상호 높은 연관성을 가져왔습니다. 유효한 국적의 보유와 그 국적에 고유한 권리의 행사가 비자발적 및 강제적 이주를 막는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 또한 이제 널리 인정되고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어떻게 무국적자 문제에 관여하게 되었는가?

유엔난민기구의 몸집이 불어남에 따라 무국적 상태를 감소시키고 무국적자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 자체도 커졌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국제 조약, 유엔총회 결의 및 자체 자문기구인 집행위원회(ExCom)의 권고에 의하여 무국적 분야의 업무에 대한 위임을 받았습니다.

1954년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의 적절한 실행을 보장하는 감독 기관에 관한 조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1961년 무국적자의 감소에 관한 협약 제11조**는 “이 협약상의 이익을 주장하는 자가 자신의 청구의 심사를 신청하고 담당기관에 대한 청구제출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의 설치의 필요를 피력하였습니다. 1975년 이 협약이 발효되자 유엔 총회는 유엔난민기구에게 이 역할을 담당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유엔난민기구의 임무는 추후 결의에 의하여 다듬어졌습니다.

1995년 유엔난민기구 집행위원회는 무국적자 문제에 관한 포괄적 지침, 즉 무국적 방지와 감소 및 무국적자 보호에 관한 결정 (Conclusion on the Prevention and Reduction of Statelessness and the Protection of Stateless Persons, Conclusion no 78)을 채택하였습니다. (집행위원회는 난민 문제 해결에 대한 확인된 관심을 기초로 ECOSOC가 선출한 국가의 대표로 구성되며 2005년 1월 현재 66개국인 구성원입니다.) 집행위원회의 1995년 무국적에 대한 결정은 “유엔난민기구에 대하여 무국적자를 위한 활동을 계속할 것을 촉구하고” 또한 “유엔난민기구가 1954년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1년 무국적자의 감소에 관한 협약에 가입을 적극적으로 도모할 것을 요청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집행위원회의 결정은 유엔난민기구에게 “정보의 보급 및 직원과 정부공무원의 교육을 통하여 무국적 방지와 감소를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관련 기구와의 협력 강화”를 요청하였습니다.

1996년 **유엔 총회**는 무국적자를 위한 활동 및 1954년과 1961년 협약의 가입 및 실행의 도모를 위하여 유엔난민기구가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을 권장하는 유사한 결의 (A/RES/50/152)를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이 결의는 유엔난민기구에 “이해당사국의 국적법의 마련 및 실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기술 및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동일한 결의에서 총회는 “국가들로 하여금 무국적자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관점에서 국제법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는 국적법을 채택하도록 촉구하고 있는데, 특히 국적의 자의적 박탈을 방지하고, 다른 국적을 보유 혹은 취득 없이 국적의 포기를 허용하는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국가가 국적의 취득, 포기, 상실에 관한 법을 제정할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유엔난민기구의 집행위원회의 결정 No. 92 [LIII] a에 포함되고 2002년 유엔총회가 지지한 보호 의제(Agenda for Protection)에서 무국적 상태는 강제 이주 및 난민 발생의 근본 원인 중의 하나로 확인되었습니다. 보호의제는 유엔난민기구의 국제적 보호에 대한 전세계 협의(Global Consultations on International Protection)의 결정체로서 목적 및 목표에 관한 성명과 난민의 국제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가, 정부 간 기구, 비정부단체 및 난민의 다양한 우려 및 권고를 반영하고 있으며 구체적 조치를 위한 지침서 역할을 합니다. 무국적 상태를 다루는 것은 강제 이주를 막고 국적을 가질 권리를 보장하는데 기여하는 방법 중 하나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지난 수 년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무국적자의 사례가 급증한 것에 대한 우려로 2004년 집행위원회는 유엔난민기구에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 국가와 더욱 활발하게 협력할 것을 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집행위원회는 또한 유엔난민기구가 계속해서 국가에게 기술적·운영적 지원을 제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최근 2005년 인권 및 국적의 자의적 박탈에 관한 결의(E/CN.4/2005/L.58)에서 유엔인권위원회는 유엔난민기구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보고서 및 현장 활동을 통하여 국적 박탈의 문제에 대처하도록 독려하였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무국적자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무엇을 하는가?

유엔난민기구는 국적법 마련 및 실행을 위하여 정부를 지원하며 공무원들을 위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2003년에서 2005년까지 유엔난민기구는 40여 개국에서 새로운 국적법의 제정과 기존 법의 개정을 도왔습니다. 또한 유엔난민기구는 많은 사람들이 무국적자이거나 국적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국가의 국적 법령에 관한 헌법 규정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국적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강제 이주가 발생하지 아니하며 무국적자를 발생시킬 조항을 포함하지 않도록 의회와 함께 일합니다.

보호 의제에서 계획된 것처럼 유엔난민기구는 유엔 회원국이 무국적자를 감소시키고 무국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에 대한 전세계 설문조사를 처음 실시 했습니다.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무국적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곳은 없으며 국제적 및 국내적으로 모두 법과 정책 간에 괴리가 심각하였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74개국의 설문 응답 분석을 토대로 포괄적인 권고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장기 체류자의 국적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는 국가의 국적 홍보 캠페인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유엔난민기구는 무국적 개인 혹은 집단의 문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관련 국가와 직접 협의하여 무국적자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유엔난민기구는 국가가 관련 개인의 법적 지위를 명백히 정리하고, 관련자들이 무국적자가 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 국가와 개인 혹은 개인의 집단 간의 법적 연관성을 인정하도록 장려합니다.

국적 지위가 해결될 때까지 무국적자는 거주 국가에서 최소한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무국적자의 최소 권리 및 의무를 명시한 1954년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의 실행을 장려하고 있으며 무국적자를 위한 보호 및 지원 프로그램을 최대한 실행할 수 있도록 국가를 지원합니다.

유엔난민기구와 함께 무국적자 문제를 다루는 단체는?

무국적자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유엔난민기구와 함께 일하는 유엔 기구는 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유엔아동기금(UNICEF) 및 유엔여성개발기금(UN Development Fund for Women, UNIFEM) 등입니다. 장기화된 무국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유엔난민기구는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ILO),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및 세계식량기금(World Food Programme, WFP)과 함께 일하며 주거, 교육 및 소득 창출 프로그램을 공동 실행하여 소외된 공동체가 사회에 통합하거나 재통합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합니다.

위에 열거된 유엔 기구 외에도 유엔난민기구는 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등 국적을 가질 권리를 보장하는 관련 유엔 조약 기구와 긴밀히 공조하고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지역 기구와 협력합니다. 유럽회의, 유럽안보협력기구, 미주기구, 아프리카연합, 아랍국가연맹, 이슬람회의기구 등과 같은 기구와 협력합니다. 유엔난민기구는 국적에 관한 유럽협약 및 국가승계에 관련된 무국적자의 방지에 관한 의정서 초안 등 기준이 될 만한 법제를 마련하고 있는 유럽회의의 국적에 관한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비정부기구도 유엔난민기구와 긴밀하게 함께 일을 합니다. 비정부기구는 유엔난민기구 프로그램을 위하여 현장에서 일하며 유엔난민기구의 활동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 유엔난민기구는 578개 시민단체 (이중 424개가 국내비정부단체임)를 포함한 770개 실행파트너(implementing partner)와 하위계약(sub-agreement)을 체결하였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국제의회연맹(Inter-Parliamentary Union, IPU)**과 함께 긴밀하게 무국적과 관련된 국제 규범에 대하여 국회의원들에게 홍보를 하며 무국적 상태를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권고 및 모범 사례를 제공합니다. 유엔난민기구는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무국적상태를 근절하며 무국적자에게 국적을 가질 권리를 보장하는 국적법을 채택하도록 장려하며 이중 또는 다중 국적을 다루는 조약들이 우연히 무국적자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도록 도와줍니다.

모범사례: 스리랑카

스리랑카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차를 생산하는 노동자의 대부분은 인도 출신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최근 인도출신의 타밀(Tamils of Recent Indian Origin)” 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대체로 “북쪽 지방 타밀(Up-Country Tamils)”이라고 불리는 이들 노동자들은 1815년에서 1948년 사이 당시 실론섬이라고 불렸던 스리랑카를 지배한 영국 정부가 인도에서 데리고 온 사람들의 후손입니다. 스리랑카가 독립한 1948년부터 1984년까지 이들 노동자의 법적 지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양한 인도-스리랑카간 양자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일부 북쪽지방 타밀족에게는 법이나 양자 협약에 따라 인도나 스리랑카의 국적이 보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은 국적도 없고 따라서 기본권도 없었습니다. 스리랑카나 인도의 국적 취득 절차에 접근할 수 없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1982년 인도 정부는 스리랑카 정부에게 북쪽 지방 타밀족에 대한 협약의 유효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전 협약의 구속력 또한 없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날부터 무국적자인 북쪽지방 타밀족은 모두 국적을 취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노조이자 정당인 실론노동자의회(Ceylon Workers Congress)는 북쪽 지방 타밀족의 권리를 위하여 수 년간 로비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스리랑카 의회는 2003년 10월 “인도 출신자의 국적보장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여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다음과 같은 인도 출신자에게 자동적으로 국적을 부여합니다.

- 1964년 10월 30일이래 스리랑카에 영주한 자 혹은
- 1964년 10월 30일이래 스리랑카에 영주한 자의 후손으로 스리랑카에 거주하고 있는 자.

이 법이 채택된 후, 정부 위원회(Office of the Commissioner General), 유엔난민기구 및 실론노동자의회는 이 새로운 법에 대한 홍보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타밀어, 영어 및 신할리어 신문과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은 이 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어디서 어떻게 국적을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스리랑카 내무부와 이민관리국이 고안한 행정 절차는 단순하고 명료하며 공정하였습니다. 무국적자를 위하여 두 가지 다른 절차가 마련되었습니다.

- 대부분 1982년 인도의 선언 이후 실효된 인도 여권 소지자인 사실상 무국적자는 자발적으로 스리랑카 국적을 자발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명하여야 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가계의 가장이 행한다. 위 의사가 표명된 서류는 이민 당국에 의하여 부서되어야 한다. 승인 후 가계의 모든 구성원은 국적을 취득한다.
- 법적 무국적자는 문서화된 선언을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신분 증명서 취득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 선언에 서명을 하여 제출한 후 정부관료의 부서를 받도록 장려한다.

양 절차 모두 무료이며 마감 시한이 정하여져 있지 않습니다.

2003년 12월 유엔난민기구와 실론노동자회의는 무국적자의 국적 취득 접수를 위해 차재배농장 지역의 50여 개의 이동 사무소에서 일하게 될 500여명의 자원봉사자를 위하여 일일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무국적자에 관한 기본 지식, 1948년 이후 제정된 다양한 관련법 및 위 새로운 법과 그 자격 기준에 대하여 교육을 받았습니다.

2003년 12월에 열흘 간, 이동 사무소의 직원들은 국적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이 캠페인을 위하여 자금을 지원하였으며 신청자가 모든 정보를 알고 자발적인 결정을 내리게끔 절차가 진행되는지를 감독하였습니다. 12월 말까지 약 19만 여명의 가장이 스리랑카 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이중 약 8만 명은 이전에 인도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법적 무국적자였습니다.

2004년 7월과 8월에는 스리랑카 북동부에서 보다 작은 두 번째 캠페인이 기획되었습니다. 2,000 명 이상의 무국적자가 신청하여 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그 후 소수의 북쪽 지방 타밀족이 지방의 현지 정부기관이나 스리랑카 수도인 콜롬보의 공공 안전, 법무 및 질서부의 국적국에 국적을 신청하여 이를 취득하였습니다.

누가 유엔난민기구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는가?

유엔난민기구는 거의 대부분 자발적 기부금을 통하야만 활동하는 몇 안되는 유엔기구 중 하나입니다. 유엔난민기구의 연간 예산 중 약 2%는 유엔 정기 예산에 대한 할당된 기여금에서 나오며 나머지는 정부, 개인 및 민간분야의 자발적 기부금을 통하여 충당됩니다.

2005년 초에, 유엔난민기구의 관심 대상자는 1,920만 명에 달하였으며 한해 총 예산은 미화 12억 달러였습니다.

2004년에 유엔난민기구는 10개국 정부로부터 기금의 86%를 받았습니다. 동시에 주로 유럽, 호주, 일본 및 미국의 민간분야로부터 미화 2,65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비정부단체는 일부 활동에 대하여 유엔난민기구를 위하여 홍보를 하여 유엔난민기구의 연간 예산에 기여를 합니다. 최근 몇 년간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및 기타 다른 언론 매체를 통한 공동의 홍보 노력의 결과로 민간 분야와 비정부단체의 기여도가 증가하였습니다.

제 5 장

국회의원의 역할

국회의원은 무국적자를 줄이고 무국적자가 국제법에 따라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취득하도록 도울 수 있는 독자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국적법을 검토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며 1954년 및 1961년 무국적 협약의 가입을 지지하며 무국적 상태의 감소 및 제거를 옹호하며 무국적자 사례를 해소하는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무국적 관련 국가법을 검토할 때 주지할 점은?

- 체약한 관련 국제 및 역내 조약을 검토한다. 국적법을 언급한 조약, 협약, 선언을 검토함으로써 국법체계의 해석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 많은 국가가 다양한 법적제도에 국적관련 조항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헌법, 시민권법, 법령 및 다양한 국법 자료를 검토하여 국가의 법 및 법해석을 조명할 수 있습니다.
- 승계국의 경우 양자간 및 다자간 협약을 검토합니다.
- 국내법체계를 검토할 때 국가가 국적의 박탈, 포기 및 상실로 인해 무국적이 발생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장치가 체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분명히 합니다.

국가법체계를 검토할 때 다음의 질문을 답합니다.

국적 취득 관련 질문

- 아버지가 국적을 소지하지 않거나 없을 경우 아들은 어머니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까?
- 출생등록을 위해 어떤 행정적 절차가 있습니까? 실제 사용되고 있습니까? 국적법은 국가 영토에 출생한자로 무국적자가 될 소지가 있는 자에게 시민권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 차별금지 원칙이 국적관련 법규에도 적용되었습니까?
- 국가 승계로 국가가 건국되었다면 선행국의 이전 국민에게 국적 취득여부를 결정할 때 해당자와 국가간 진정하고 유효한 연관이 있는지, 승계 시점에 해당자의 실재거주지, 해당자의 의지 및 지역출신 등이 고려되었습니까?

국적 상실 관련 질문

- 혼인 및 사회적 지위의 변경 관련 조항은 무국적을 방지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국적이 어떻게 상실 되는가? 무국적 상태의 방지를 염두해 두고 있습니까?
- 국적의 포기는 다른 국적의 취득 혹은 취득의 보장을 받은 후에만 가능합니까?

- 다른 국가의 귀화 신청자가 아직 그 국가로부터 국적취득 보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의 국적 지위가 바뀌었습니까?
- 국적 박탈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 사례에 박탈 이유가 명백하게 명시되어 있는가? 절차적 보장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국적 회복 관련 질문

- 국가 영토에 합법적으로 영주하는 자의 국적 회복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졌습니까?
- 혼인 혹은 여타 지위의 변경으로 취득한 국적을 상실할 경우 이전에 국적을 소지했던 자의 국적이 회복되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자동적으로 국적이 회복되는가 아니면 무국적인 상태에서 신청을 해야 합니까? 절차적 보장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귀화 관련 질문

- 외국인이 귀화를 신청할 경우 그는 이전 국적 포기를 공식적으로 증빙해야 합니까? 아니면 새로운 국적을 취득할 경우 이전 국적이 상실된다는 보장만 받아도 됩니까?
- 귀화 절차 및 귀화 자격이 명백하게 정의되어 있습니까?
- 장기간의 절차, 신청인이 제공하지 못하는 서류의 제출 요청 및 과도하게 짧은 시한과 같이 무국적 상태가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절차가 있습니까?

왜 1954년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1961년 무국적자의 감소에 관한 협약에 가입해야 하나요?

1954년 및 1961년 협약의 가입은 국가적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 인권보호 및 개인의 존엄성을 증진
- 개인과 국가간 진정하고 유효한 연관성의 인지를 드러냄.
- 무국적 상태에 있는 자에게 안정감 및 법적 정체성을 강화
- 개인에게 국가의 보호와 의무 및 권한을 부여
- 국가 단결 및 안정성을 강화

1954년 및 1961년 협약의 가입은 국제적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 무국적 상태를 감소하고 제거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냄.
- 개인 및 대규모 추방에 대한 국제 금지를 강화
- 국제관계 및 안정성을 향상
- 인권 및 인본주의적 기준을 위한 의지를 보여줌.

- 원인에 대처하여 강제이주를 방지하는데 도모
- 국적 취득 및 유효한 국적의 유지 관련 국제법의 마련을 도모
- 협약에 명시된 원칙을 따르고자 하는 국제적지원을 동원하는 유엔난민기구 의 노력을 지원
- 국적 관련 분쟁의 해결을 도모

어떻게 협약에 가입 할 수 있나요?

유엔 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1954년 및/혹은 1961년 협약에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탁용 가입서는 국가원수 혹은 외교부 장관이 서명하여 뉴욕 유엔본부의 국가대표에게 전송되어야 합니다.

협약에 대한 유보를 할 수 있나요?

각 국가가 비준 혹은 가입 당시 각국의 특정 상황으로 인해 각 협약에 대해서 체약원국이 근본조항으로 사료하는 조항 이외의 일부 조항에 대한 유보를 할 수 있습니다.

1954년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 다음 조항 이외의 조항에 대한 유보가 가능합니다 제1항(정의/예외조항), 제3항 (차별금지), 제4항 (종교의 자유), 제16.1조 (재판받을 권리), 및 제33조 에서 제42조 (마지막 조항)까지.

1961년 무국적 상태의 감소에 대한 협약: 오직 다음 조항에 대한 유보가 가능합니다. 제 11항 (기관), 제14항 (국제사법재판소의 분쟁소송제기), 및 제15항 (협약국의 주권영토).

각 협약에 대한 유보의 수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협약이 효과적으로 실행되기 위해 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상기 두개의 협약이 효과적으로 실행되기 위한 국법이 채택되거나 개정되어야 합니다. 유엔난민기구는 각 국가의 특정 법 전통 및 자원을 고려하여 국제 의무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전문적 자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협약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국회의원은 어떠한 실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 국가가 두 협약의 체약국인지 알아봅니다.
- 협약국이 아닌 경우 정부에게 서면 혹은 구두로 질문을 제기하거나 의원의 개별법안 채택을 고려해 봅니다.
- 적당한 기간 내에 협약 비준 혹은 가입 요청이 제기된 경우 필요한 정보를 검토한 후 가입을 위해 투표합니다.

- 만약 정부가 적당한 기간 내에 이를 의회에 제출 하지 않을 경우 의회 절차를 활용하여 그 이유에 대해 묻고 지체없이 비준 혹은 가입 절차를 시작하도록 독려합니다.
- 만약 정부가 두 개 협약 혹은 그 중 하나를 체결했지만 비준절차를 지연한 경우 정부의 지연에 대해 질문하고 절차의 가속화를 장려합니다. 본 사항에 대한 입법권을 사용합니다.
- 만약 정부가 비준 혹은 가입을 반대하는 경우 그 이유를 가능한 구체적으로 찾아 의혹이나 잘못된 이해를 제거하며 귀하의 정치적 네트워크를 찾아 본 절차를 가속화시킵니다. 비준 및 가입의 명분을 알리기 위해 유권자와 함께 홍보합니다
- 다른 국가의 분리 혹은 해체로 인해 설립된 국가의 의원인 경우 선행국이 가입한 조약은 신생국가에게 자동 구속력이 없습니다. 신생국가는 선행국가가 가입한 조약에 새로운 국가로 가입하거나 선행국의 조약에 구속되지 않고자 하는 의도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 협약이 비준되고 발효된 이후 의회가 협약조항에 부합하는 국법을 채택하도록 합니다. 의회 절차를 사용하여 정부가 적절한 시한 내에 의회에게 법안 초안 혹은 기존 법의 개정안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 만약 정부가 의회에게 조약의 범위를 제한하는 유보, 반대, 양해선언과 함께 비준을 요청한 경우 이러한 제한의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면 당파 혹은 상황적 이해보다 일반적 이해를 위해 홍보합니다.
- 만약 조약의 범위를 제한하는 유보, 반대, 양해선언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면 의회적 절차를 활용하여 정부의 의도를 질문하고 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 가입 혹은 협약의 원칙에 부합하는 국가법 마련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귀국의 유엔난민기구 사무소로 연락합니다.

무국적 문제에 대한 인지를 높이기 위해 국회의원이 취할 수 있는 방법?

국법 마련 책임자인 국회의원은 무국적 상태의 감소 및 근절과 무국적자의 권리 보호를 옹호하기 위한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의원들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법을 채택하기 위해 정부를 독려하며 동시에 유권자의 호응을 얻어내야 합니다. 시민 사회가 무국적 상태에 대한 문제를 이해할 때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원의 노력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들은 무국적과 확실한 국적의 중요성에 대한 연설, 무국적 상태를 제거하기 위한 필요에 대한 신문기고, 무국적자를 지원하는 비정부기구 및 여타 시민사회활동가와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개별 무국적 관련 사례의 신속한 해결을 옹호함으로써 인지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의원들은 소수민족의 권리를 증진시키고 다른 그룹이 국가 구성원으로 편입되는 것을 옹호하거나 무국적자가 국민으로 수용되기 위해 공동체간 대화통로를 마련하여 무국적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본 사항에 국제적 협력을 장려하기 위해 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전세계의 무국적자를 감소시키기 위해 국제적 협력은 중요합니다. 국회의원들은 자국 정부가 무국적 상태의 감소 및 제거에 대한 국제적 노력 및 개별 무국적 관련 사례의 해결을 위해 전적으로 참여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은 이웃 국가의 의원을 초대하여 역내 국적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국가 간 국적법에 호환성을 부여하는 것 또한 무국적 상태의 감소 및 제거를 위한 좋은 방법입니다.

부록 1

1954년 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협약 체결국

발효일: 1960년 6월 6일

전체 체결국 수: 57개국 (2005년 9월 1일 기준)

국가명	서명	비준(비), 가입(가), 승계(승)
알바니아		2003년 6월 23일 (가)
알제리		1964년 7월 15일 (가)
안티구아 바부다		1988년 10월 25일 (승)
아르헨티나		1972년 6월 1일 (가)
아르메니아		1994년 5월 18일 (가)
호주		1973년 12월 13일 (가)
아제르바이잔		1966년 8월 16일 (가)
바베이도스		1972년 3월 6일 (승)
벨기에	1954년 9월 28일	1960년 5월 27일 (비)
볼리비아		1983년 10월 6일 (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1993년 9월 1일 (승)
보츠와나		1969년 2월 25일 (승)
브라질	1954년 9월 28일	1996년 8월 13일 (비)
차드		1999년 8월 12일 (가)
콜롬비아	1954년 12월 30일	
코스타리카	1954년 9월 28일	1977년 11월 2일 (비)
크로아티아		1992년 10월 12일 (승)
체코 공화국		2004년 7월 19일 (가)
덴마크	1954년 9월 28일	1956년 1월 17일 (비)
에콰도르	1954년 9월 28일	1970년 10월 2일 (비)
엘살바도르	1954년 9월 28일	
피지		1972년 6월 12일 (승)
핀란드		1968년 10월 10일 (가)
프랑스	1955년 1월 12일	1960년 3월 8일 (비)
독일	1954년 9월 28일	1976년 10월 26일 (비)
그리스		1975년 11월 4일 (가)
과테말라	1954년 9월 28일	2000년 11월 28일 (가)
기니		1962년 3월 21일 (가)
교황청	1954년 9월 28일	
온두라스	1954년 9월 28일	
헝가리		2001년 11월 21일 (가)

1954년 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협약 체결국(계속)

국가명	서명	비준(비), 가입(가), 승계(승)
아일랜드		1962년 12월 17일 (가)
이스라엘	1954년 10월 1일	1958년 12월 23일 (비)
이탈리아	1954년 10월 20일	1962년 12월 3일 (비)
키리바시		1983년 11월 29일 (승)
대한민국		1962년 8월 22일 (가)
라트비아		1999년 11월 5일 (가)
레소토		1974년 11월 4일 (승)
라이베리아		1964년 9월 11일 (가)
리비아 아랍 민주주의공화국		1989년 5월 16일 (가)
리히텐슈타인	1954년 9월 28일	
리투아니아		2000년 2월 7일 (가)
룩셈부르크	1954년 10월 28일	1960년 6월 27일 (비)
구유고 마케도니아 공화국		1994년 1월 18일 (승)
마다가스카르*		1962년 2월 20일 (가)
멕시코		2000년 6월 7일 (가)
네덜란드	1954년 9월 28일	1962년 4월 12일 (비)
노르웨이	1954년 9월 28일	1956년 11월 19일 (비)
필리핀	1955년 6월 22일	
세인트 빈센트 그레네딘		1999년 4월 27일 (승)
슬로바키아		2000년 4월 3일 (가)
슬로베니아		1992년 7월 6일 (승)
스페인		1997년 5월 12일 (가)
스와질랜드		1999년 11월 16일 (가)
스웨덴	1954년 9월 28일	1965년 4월 2일 (비)
스위스	1954년 9월 28일	1972년 7월 3일 (비)
트리니다드 토바고		1966년 4월 11일 (승)
튀니지		1969년 7월 29일 (가)
우간다		1965년 4월 15일 (가)
영국	1954년 9월 28일	1959년 4월 16일 (비)
우루과이		2004년 4월 2일 (가)
유고슬라비아		2001년 3월 12일 (승)
잠비아		1974년 11월 1일 (승)
짐바브웨		1998년 12월 1일 (승)

*1965년 4월 2일자로 사무총장에게 제출한 서신을 통해, 마다가스카르 정부는 조약 가입 폐기 통고하였습니다. 이는 1966년 4월 2일자로 발효되었습니다.

부록 2

1961년 무국적자의 감소에 관한 협약 체결국

발효일: 1975년 12월 13일

전체 체결국 수: 30개국 (2005년 9월 25일 기준)

국가명	서명	비준(비), 가입(가), 승계(승)
알바니아		2003년 7월 9일 (가)
아르메니아		1994년 5월 18일 (가)
호주		1973년 12월 13일 (가)
오스트리아		1972년 9월 22일 (가)
아제르바이잔		1996년 8월 16일 (가)
볼리비아		1983년 10월 6일 (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1996년 12월 13일 (가)
캐나다		1978년 7월 17일 (가)
차드		1999년 8월 12일 (가)
코스타리카		1977년 11월 2일 (가)
체코 공화국		2001년 12월 19일 (가)
덴마크		1977년 7월 11일 (가)
도미니카 공화국	1961년 12월 5일	
프랑스	1962년 5월 31일	
독일		1977년 8월 31일 (가)
과테말라		2001년 7월 19일 (가)
아일랜드		1973년 1월 18일 (가)
이스라엘	1961년 8월 30일	
키리바시		1983년 11월 29일 (승)
라트비아		1992년 4월 14일 (가)
레소토		2004년 9월 24일 (가)
라이베리아		2004년 9월 22일 (가)
리비아 아랍 민주주의공화국		1989년 5월 16일 (가)
네덜란드	1961년 8월 30일	1985년 5월 13일 (비)
니제르		1985년 6월 17일 (가)
노르웨이		1971년 8월 11일 (가)
세네갈		2005년 9월 21일 (가)
슬로바키아		2000년 4월 3일 (가)
스와질랜드		1999년 11월 16일 (가)
스웨덴		1969년 2월 19일 (가)

부록 3

Model instrument of accession to the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Stateless Persons of 1954

WHEREAS a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Stateless Persons was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on the twenty-eighth day of September,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fifty-four, and is open for accession pursuant to Article 35 thereof;

AND WHEREAS, it is provided in section 3 of the said Article 35 that accession thereto shall be affected by deposit of an instrument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NOW THEREFORE, the undersigned, [Title of Head of State, Head of Government or Foreign Minister] hereby notifies the accession of the [State concerned];

GIVEN under my hand in _____ this _____ day of _____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_____ .

[Public Seal and Signature
of Head of Government,
Foreign Minister...]

[Signature of Head of State,
custodian,
if appropriate..]

Model instrument of accession to the Convention on the Reduction of Statelessness of 1961

WHEREAS a Convention on the Reduction of Statelessness was adopted by the Plenipotentiaries on the thirtieth day of August,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sixty-one, and is open for accession pursuant to Article 16 thereof:

AND WHEREAS, it is provided in section 3 of the said Article 16 that accession thereto shall be affected by deposited of an instrument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NOW THEREFORE, the undersigned, [Title of Head of State, Head of Government, or Foreign Minister] hereby notifies this accession of the [State concerned],

GIVEN under my hand in _____ this _____ day of _____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_____ .

[Public Seal and Signature
of Head of Government,
Foreign Minister...]

[Signature of Head of State,
custodian,
if appropriate..]

부록 4

유엔난민기구 사무소

AFGHANISTAN

UNHCR Representation
in Afghanistan
PO Box 3232
Kabul
or
41 Jadi Solh (Peace Avenue)
Kabul
Tel: +92 51 922 11 25
Fax: +92 51 282 05 11

ALBANIA

UNHCR Representation
in Albania
Rruga "Donika Kastrioti"
Tirana
Tel: +355 42 50 207
Fax: +355 42 28 492

ALGERIA

UNHCR Representation
in Algeria
Boite Postal 444
Hydra
Alger
or
20 Rue Emile Payen
Hydra
Alger
Tel: +213 21 69 1212
Fax: +213 21 69 2374

ANGOLA

UNHCR Representation
in Angola
C.P. 1342
Luanda
or
Rua Eduard Mondlaine/SN
Luanda
Tel: +244 2332 046
Fax: +244 2331 652

ARGENTINA

UNHCR Regional

Representation for Southern
South America
Cerrito 836
10 Piso . 1010
Buenos Aires
Tel: +54 11 4815 7870
Fax: +54 11 4815 4352

ARMENIA

UNHCR Representation in
Armenia
14 Petros Adamyan Str.
Yerevan 375010
Tel: +37 41 56 47 71
Fax: +37 41 56 78 17

AUSTRALIA

UNHCR Regional
Representation for Australia,
New Zealand, Papua New
Guinea and the South
Pacific in Australia
15 Hunter Street
Yarralumla ACT 2600
Canberra
Tel: +61 2 6273 2733
Fax: +61 2 6273 6822

AUSTRIA

UNHCR Representation in
Austria
Vienna International Centre
(Building J, 1st floor)
Wagramerstrasse 5
PO Box 550
1400 Vienna
Tel: +431 260604047
Fax: +43 1 2634115

AZERBAIJAN

UNHCR Representation
in Azerbaijan
3, Azer Aliyev Street
Baku
Tel: +99 412 92 1443

Fax: +99 412 98 11 34

BANGLADESH

UNHCR Representation in
Bangladesh
PO Box 3474
Dhaka 1000
or
House N/E (N) 8, Road 90,
Gulshan 2, Dhaka 1212
Tel: +8802 88 2 68 02
Fax: +8802 88 2 65 57

BELARUS

UNHCR Representation in
Belarus
Prospekt Partizanskij 6 A,
6th floor
Minsk 220033
Tel: +375 172983335
Fax: +375 172982369

BELGIUM

UNHCR Regional
Representation for Belgium,
Luxembourg and the
European Institutions
Rue Van Eyck 11a
B-1050 Bruxelles
Tel: +32 2 649 01 53
Fax: +32 2 627 17 30

BENIN

UNHCR Regional
Representation in Benin,
Burkina Faso, Niger
and Togo
Boite Postale 08-1066
Lot 01 Patte d'Oie
Cotonou
Tel: +229 30 28 98
Fax: +229 30 28 90

BOSNIA AND HERZE- GOVINA

UNHCR Representation
in Bosnia and Herzegovina
UNIS Building Fra Andjela
Zvizdovica 1
71000 Sarajevo
Tel: +387 33 666 160
Fax: +387 33 290 333

BOTSWANA

UNHCR Office of the Chief
of Mission in Botswana
PO Box 288
Gaborone
or
UN House , Plot 22
Khama Crescent
Gaborone
Tel: +267 35 21 21
Fax: +267 57 09 96

BRAZIL

UNHCR Representation
in Brazil
Setor Comercial Norte
Quadra 02, Bloco A
11th Floor , Ed. Corporate
Financial Center
CEP 70712-901
Brasilia , DF
Tel: +55 61 3038 9272
Fax: +55 61 3038 9279

BULGARIA

UNHCR Representation
in Bulgaria
19 Denkoglu str,
1000 Sofia
Tel: +359 2 98 02 453
Fax: +359 2 98 01 639

BURUNDI

UNHCR Representation
in Burundi
B.P. 307, Bujumbara
or
No. 1, Avenuedu Large
4620 Bujumbara
Tel: +257 22 3245
Fax: +257 22 95 23/24 19 87

CAMBODIA

UNHCR Representation

in Cambodia
PO Box 539
House No 2, Street No 352
Beung Keng Kang
Phnom Penh
Tel: +855 23 216005
Fax: +855 23 216274

CAMEROON

UNHCR Representation
in Cameroon
Boite Postale 7077
Yaounde
or
Quartier Nlongkak
Rue No 1032 Batiment no 46
Yaounde
Tel: +237 20 29 54
Fax: +237 21 35 91

CANADA

UNHCR Representation
in Canada
280 Albert Street, Suite 401
Ottawa
Ontario
KIP 5G8
Tel: +1 613 232 09 09
Fax: +1 613 230 18 55

CHAD

UNHCR Representation
in Chad
B.P. 906
N'Djamena
or
Quartier Cardale, Avenue
Felix Eboue
Immeuble STAT
N'Djamena
Tel: +235 51 86 10
Fax: +235 51 5340

CENTRAL AFRICAN REPUBLIC

UNHCR Representation
in the Central African Republic
Boite Postale 950
Bangui
or
Rue Joseph Degrain
(Route de Sofitel)

Bangui
Tel: +236 61 40 76
Fax: +236 61 98 34

CHINA (PEOPLE'S REPUBLIC OF)

UNHCR Regional
Representation in China
1-2-1, Tayan Diplomatic
Office,
Building 14
Liang Ma He Nan Lu
Beijing 100600
Tel: +86 10 6 532 68 06
Fax: +86 10 6532 16 47

COLOMBIA

UNHCR Representation
in Colombia
Calle 114 No 9-01 Office 601
Edificio Teleport Torre A
Bogota
Tel: +571 658 06 00
Fax: +571 658 06 02

CONGO (DEMOCRATIC REPUBLIC OF)

UNHCR Regional
Representation for Central
Africa in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PO Box 7248
Kinshasa 1
or
6729 Avenue de l'OUA
Kinshasa
Tel: +243 81 880 1245
Fax: +243 81 301 0435

CONGO (REPUBLIC OF)

UNCHR Representation
the Republic of Congo
BP 1093
Brazzaville
or
6, Rue 18 Mars 1977
Quartier Cathedrale
Brazzaville
Tel: +242 811 169
+242 815 763(UNDP)
Fax: +242 815 912

COSTA RICA

UNHCR Representation
in Costa Rica
Edificio Torre del Este . 5º
Piso
Frente a la facultad
de Derecho de la UCR
Apartado Postal 121009 –
FECOSA
San Pedro
Tel: +506 225 0049
Fax: +506 224 4891

COTE D'IVOIRE

UNHCR Representation
in Cote d'Ivoire
01 BP 7982
Abidjan 01
or
Angle Rue Des Jardins .
Boulevard
Latrille
Cocody, Il Plateaux
Abidjan
Tel: +225 22 515 577
Fax: +225 22 515 588

CROATIA

UNHCR Representation
in Croatia
3rd floor
24 Slovenska Ulica
10000 Zagreb
Tel: +385 1 3713 555
Fax: +385 1 3713 588
+385 1 3713 565

CYPRUS

UNHCR Representation
in Cyprus
PO Box 1642
1590 Nicosia
or
South: C/O UNFICYP
Secretariat UNPA
Nicosia
Tel: +357 2 35 90 25
Fax: +357 2 35 90 37

CZECH REPUBLIC

UNHCR Representation
in Czech Republic

Namesti Kinskych 6
PO Box 210
150 00 Prague 5
Tel: +420 2 571 998 66
Fax: +420 2 571 998 62

DJIBOUTI

UNHCR Representation
in Djibouti
BP 1885
Djibouti
or
Rue Abdoukader Waberi,
Heron
Lot No TF 1148
Quartier Marabout
Djibouti
Tel: +253 35 22 00
Fax: +253 35 86 23

ECUADOR

UNHCR Representation
in Ecuador
Avenida Amazonas 2889
y la Granja
Edificio Naciones Unidas
Piso 2
Quito
Tel: +593 2 2460 272
Fax: +593 2 2460 280

EGYPT

UNHCR Regional
Representation in the Arab
Republic of Egypt
PO Box 1844
Cairo
or
No 8 el Fawakeh Street
Mohandessin, Giza
Cairo
Tel: +20 2 762 1570
Fax: +20 2 762 1576

ERITREA

UNHCR Representation
in Eritrea
PO Box 1995, Asmara
or
House Number 108
Emperor Yohannes
Avenue Asmara

Tel: +291 1 12 61 21
Fax: +291 1 12 72 55

ETHIOPIA

UNHCR Representation
in Ethiopia
PO Box 1076
Addis Ababa
or
Bole Road, Wereda 1
Kebele 23
House No 1255/01-02
Addis Ababa
Tel: +251 1 612 822
Fax: +251 1 611 666

FRANCE

UNHCR Representation
in France
9, rue Keppler
F-75016 Paris
Tel: +33 1 44 43 48 58
Fax: +33 1 40 70 07 39

GABON

UNHCR Regional
Representation in Gabon
BP 20472
Libreville
or
Quartier Sotega
Libreville
Tel: +241 77 8262
Fax: +241 77 8278

GAMBIA

UNHCR Office of the
Chief of Mission in Gambia
PO Box 4249
Bakau
or
6th Street East
Kotu Lauout
Bakau
Tel: +220 4 460 850
Fax: +220 4 464 169

GEORGIA

UNHCR Representation
in Georgia
2a Kazbegi Ave. . 4th floor
380060 Tbilissi

Tel: +995 32 779 612
Fax: +995 32 441 302

GERMANY

UNHCR Representation
in Germany
Wallstrasse 9 , 13
10179 Berlin
Tel: +49 302022020
Fax: +49 30 2022 0220

GHANA

UNHCR Representation
in Ghana
No 25 Sir Arku Korsah Street
Roman Ridge
Airport Residential Area
Accra
Tel: +233 21776 108
Fax: +233 21 773158

GREECE

UNHCR Representation
in Greece
23 Taygetou Street
Palaio Psychico
15452 Athens
Tel: +30 210 672 64 62
Fax: +30 210 672 64 17

GUINEA

UNHCR Representation
in Guinea
B.P. 4158
Coleah Corniche–Sud
Conakry
Tel: +224 46 47 09
Fax: +224 46 58 08
HUNGARY

UNHCR Representation in Hungary

Felvinci ut 27
1022 Budapest
Tel: +36 13363062
Fax: +36 13363080

INDIA

UNHCR Office of the Chief
of Mission in India
PO Box 3135
14 Jor Bagh

New Delhi 110003
Tel: +91 11 2469 0730
Fax: +91 11 2462 0137

INDONESIA

UNHCR Regional
Representation in Indonesia
PO Box 6602/JKPWK
Jakarta 10310
Menova Ravindo
Jl. Kebon Sirih Kav.75
Jakarta Pusat 10340
Tel: +62 21 391 28 88
Fax: +62 21 391 27 77

IRAN (ISLAMIC REPUBLIC OF)

UNHCR Representation
in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No 5, East Emdad Street,
Vanak sq.
North Shiraz Ave.
Tehran 19917
Tel: +98 21 8805 72 01
Fax: +98 21 8805 72 12

IRAQ

UNHCR Representation
in Iraq
PO Box 10141 Karrada
Baghdad
or
District Number 904
Hay Al-Wahda
Street Number 42
Building Number 52
Baghdad
Tel: +964 1 719 0670
Fax: +1 212 963 3009

IRELAND

UNHCR Representation in
Ireland
Suite 4
Merrion House
1/3 Lower Fitzwilliam Street
Dublin 2
Tel: +353 1 631 4510
Fax: +353 1 631 4616

ISRAEL

UNHCR Honorary

Representation in Israel
PO Box 3489
Jerusalem
or
Shlomtzion Ha Malka 10
Jerusalem
Tel: +972 2 621 4109
Fax: +972 2 623 4392

ITALY

UNHCR Regional
Representation in Italy
Via Caroncini 19
00197 Roma
Tel: +39 06 802121
Fax: +39 06 802123/24

JAPAN

UNHCR Representation
in Japan
UNU Bldg., 6F . 5–53–70,
Jingumae
Shibuya-ku, Tokyo 159–0001
Tel: +81 33 499 20 11
Fax: +81 33 499 22 72

JORDAN

UNHCR Regional
Representation in Jordan
PO Box 17101
1195 Amman
or
5 Hafez Abdul-Haija Street
Deir Ghbar
Amman
Tel: +962 6 550 20 30
Fax: +962 6 592 46 58

KAZAKHSTAN

UNHCR Representation
in Kazakhstan
67 Tole bi
Almaty . 480091
Tel: +7 3272 791244
Fax: +7 3272 583982

KENYA

UNHCR Representation
in Kenya
PO Box 43801, Nairobi
or
Chiromo Road

(next to Caltex Station)
By Consolata church
Westlands
Nairobi
Tel: +254 20 444 2000
Fax: +254 20 423 2080

KOREA (REPUBLIC OF)

UNHCR Representation
in Republic of Korea
7F Kumsegi Bldg.
16, Euljiro 1 Ga
Joong-Ku
Seoul 100-191
Tel: +82 2 773 7011
Fax: +82 2 773 7014

KUWAIT

UNHCR Liason Office
in Kuwait
PO Box 28742
13148 Safat
Kuwait City
or
Khaitan Area
Block No 04
Al Walid Ebin Abdel Malek
Street No 206
Building No 90009
Kuwait City
Tel: +965 476 4982
Fax: +965 476 4257

KYRGYZSTAN

UNHCR Representation
in Kyrgyzstan
UN House (3rd floor)
160 Chui Avenue
Bishkek 720010
Tel: +996 312 611 264
Fax: +996 312 611 271

LEBANON

UNHCR Representation
in Lebanon
PO Box 7332
Beirut
or
Michel Bustrus Street
Nasr Building
Achrafieh
Tel: +961 1 560 699

Fax: +961 1 560 717

LIBERIA

UNHCR Representation
in Liberia
PO Box 9077
Monrovia
or
Haider Building
Mamba Point
Monrovia
Tel: +231 22 6233
Fax: +231 22 6235

LIBYAN ARAB JAMAHIRIYA

UNHCR Office of the Chief
of Mission in Libyan Arab
Republic
PO Box 80708
Tripoli
or
Uthman Ibn Affan St
Ben Ashour
Tripoli
Tel: +218 21 361 9662
Fax: +218 21 361 9661

LUXEMBOURG

Office of the UNHCR
Corresepondent in
Luxembourg
1 rue Jean Pierre Brasseur
b.p. 567
2015 Luxembourg
Tel: +352 454 018
Fax: +352 454 303

MACEDONIA (FORMER YUGOSLAV REPUBLIC OF)

UNHCR Representation
in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PO Box 873
1000 Skopje
or
Zeleznicka 53
1000 Skopje
Tel: +389 2 3118 641
Fax: +389 2 3131 040

MALAWI

UNHCR Representation
in Malawi
PO Box 30230
Lilongwe 3
or
7th Floor
Kang'ombe Building
City Centre
Lilongwe 3
Tel: +265 177 2155
Fax: +265 177 4128

MALAYSIA

UNHCR Representation
in Malaysia
PO Box 10185
50706 Kuala Lumpur
or
570 Jalan Bukit Petaling
50460 Kuala Lumpur
Tel: +60 3 2141 1322
Fax: +60 32141 1780

MAURITANIA

UNHCR Office of the Chief
of Mission in Mauritania
C/O UNDP, BP 4405,
Nouakchott
or
Ilot K No 159-160-161
Route de la Corniche
Nouakchott
Tel: +222 5 257 414
Fax: +222 5 256 176

MEXICO

UNHCR Regional
Representation for Mexico,
Central America and Cuba
Presidente Masaryk 29
sexto piso
Colonia Polanco
11570 Mexico, D.F.
Tel: +52 5 55263 9851
Fax: +52 5 55250 9360

MOLDOVA

UNHCR Representation
in the Republic of Moldova
31 August 1989 Street, #57

MD-2012 Chisinau
Tel: +373 22 271 853
Fax: +373 22 271 953

MOROCCO

UNHCR Honorary
Representation in Morocco
12, Rue de Fes-Hassan
Rabat
Tel: +212 377 676 06
Fax: +212 377 661 96

MOZAMBIQUE

UNHCR Office of the Chief
of Mission in Mozambique
PO Box 1198
Maputo
or
Avenida dos Presidentes 33
Maputo
Tel: +258 1 490 242
Fax: +258 1 490 635

MYANMAR

UNHCR Representation
in Myanmar
PO Box 1485, Yangon
or
287 Pyay Road
Sanchaung Township
Yangon
Tel: +951 524022
Fax: +951 524 031

NAMIBIA

UNHCR Representation
in Namibia
Private Bag 13310,
Windhoek
or
2nd Floor, Sanlam Building
Independence Avenue
Windhoek
Tel: +264 61 237 143
Fax: +264 61 230 055

NEPAL

UNHCR Representation
in Nepal
PO Box 2374, Kathmandu
or
Dhara Marga Anil Kuti

Maharajgunj
Kathmandu
Tel: +977 1441 2521
Fax: +977 1441 2853

NIGERIA

UNHCR Representation
in Nigeria
UN House Plot no 617/618
Diplomatic Zone
Central Area District
PMB 2851, Garki
Abuja
Tel: +234 9 461 8569
Fax: +234 9 461 8598

PAKISTAN

UNHCR Representation
in Pakistan
PO Box 1263
Islamabad
or
No 2 Diplomatic Enclave
QUAID-E-AZAM, University
Road
Sector G-4
Islamabad
Tel: +92 51 282 9502
Fax: +92 51 227 9455

PANAMA

UNHCR Representation
in Panama
La Ciudad del Saber
Gaillard Street,
Building 812-B
Panama City
Tel: +507 317 1630
Fax: +507 317 1633

PAPUA NEW GUINEA

UNHCR Representation
in Papua New Guinea
PO Box 1909, Port Moresby
or
4th Floor , ADF House
(Next St. Mary's
Catholic Church)
Musgrave Street, Town
Port Moresby,
Tel: +675 321 7422
Fax: +675 321 5977

PHILIPPINES

UNHCR Representation
in the Philippines
PO Box 2074 (MCPO)
G. Puyat Avenue
1260 Makati
Metro Manila
or
3rd Floor, JAKA II Building
150 Legaspi Street
1200 Makati, Metro Manila
Tel: +63 2 818 5121
Fax: +63 2 817 4057

POLAND

UNHCR Representation
in the Republic of Poland
2, Aleja Roz
PL-00 556 Warsaw
Tel: +48 22 628 69 30
Fax: +48 22 625 61 24

ROMANIA

UNHCR Representation
in Romania
25, Armeneasca Street,
Sector 2
70228 Bucharest
Tel: +40 1 211 29 44
Fax: +40 1 210 15 94

RUSSIAN FEDERATION

UNHCR Representation
in the Russian Federation
United Nations Office
6 Obukh Pereulok
Moscow 103064
Tel: +7 503 232 30 11
Fax: +7 503 232 30 16

RWANDA

UNHCR Representation
in Rwanda
BP 867
Kigali
or
Bd de L'Umuganda
Commune Kacyiru
Secteur Kimihurura
Cellule Kamukina
Kigali
Tel: +250 58 5107

Fax: +250 58 3485

SAUDI ARABIA

UNHCR Regional
Representation for Saudi
Arabia
PO Box 94003
Riyadh 11693
or
Fazari Square
Pension Fund Commercial
Complex
Block C-13
Dipomatic Quarters
Riyadh
Tel: +966 1 482 8835
Fax: +966 1 482 8737

SENEGAL

UNHCR Regional
Representation in Senegal
BP 3125, 59 rue Docteur
Theze
Dakar
Tel: +221 823 66 03
Fax: +221 823 66 00

SERBIA AND MONTENEGRO

UNHCR Representation
in Serbia and Montenegro
Krunska 58
11000 Belgrade
Tel: +381 38 308 2100
Fax: +381 38 344 2947

SIERRA LEONE

UNHCR Representation
in Sierra Leone
PO Box 475, Freetown
or
29 Wilkinson Road
Freetown
Tel: +232 22 234 321
Fax: +232 22 234 347

SLOVAK REPUBLIC

UNHCR Representation
in the Slovak Republic
Sturova 6
811 02 Bratislava
Tel: +421 2 52 92 78 75

Fax: +421 2 52 92 78 71

SLOVENIA

UNHCR Representation
in Slovenia
Miklosiceva Cesta 18/II
1000 Ljubljana
Tel: +386 1 4328 240
Fax: +386 1 4328 224

SOMALIA

UNHCR Representation
in Somalia
PO Box 43801, Nairobi
or
Lion Place
Waiyaki Way
(Next to St Marks Church)
Westlands
Nairobi
Kenya
Tel: +254 20 422 2200
Fax: +254 20 422 2280

SOUTH AFRICA

UNHCR Regional
Representation in South
Africa
PO Box 12506
The Tramshed
Pretoria
or
8th floor
Metro Park Building
351 Cnr. Schooman
& Prinsloo Str.
Pretoria 0002
Gauteng Province
Tel: +27 12 354 8303
Fax: +27 12 354 8390

SPAIN

UNHCR Representation
in Spain
Avenida General Pero 32-2a
PO Box 36-121
E-28020 Madrid
Tel: +34 91 556 36 49
Fax: +34 91 417 5345

SRI LANKA

UNCHR Representation

in Sri Lanka
97 Rosmead Place
Colombo 07
Tel: +94 11 268 3968
Fax: +94 11 268 3971

SUDAN

UNHCR Representation
in Sudan
PO Box 2560, Khartoum
or
Mohammed Nageeb Road
(North of Farouk Cemetery)
Khartoum No 2
Tel: +249 11 47 11 01
Fax: +249 11 47 31 01

SWEDEN

UNHCR Regional
Representation
for the Nordic and Blatic
Countries in Sweden
Ynglingagatan 14 . 6th Floor
S-11347 Stockholm
Tel: +46 8 457 4880
Fax: +46 8 457 4887

SWITZERLAND

UNCHR Liaison Unit
for Switzerland and
Liechtenstein
Case Postale 2500
94 Rue Montbrillant
CH-1211 Geneve 2
Tel: +41 22 739 8755
Fax: +41 22 739 7379

SYRIAN

ARAB REPUBLIC

UNHCR Representation
in Syria
PO Box 30891
Damascus
or
Al Malki
Mohamed Al Bazm
Street No 14
Al Nabelsi Building
Damascus
Tel: +963 11 373 5940
Fax: +963 11 373 6108

TAJIKISTAN

UNHCR Representation
in Tajikistan
Prospekt Drujba Naradov 106
Dushanbe, 734013
Tel: +992 372 214406
Fax: +992 372 510039

**TANZANIA
(UNITED REPUBLIC OF)**

UNHCR Representation
in the United Republic of
Tanzania
PO Box 2666
Dar-es-Salaam
or
Plot 18 Kalenga Street
Dar-es-Salaam
Tel: +255 22 215 00 75
Fax: +255 22 215 28 17

THAILAND

UNCHR Regional
Representation for Thailand,
Cambodia and Vietnam
PO Box 2-121
Rajdamnern Avenue
United Nations Building
3rd Floor, Block A
Bangkok 10200
Tel: +66 2 288 1234
Fax: +66 2 280 0555

TIMOR-LESTE

UNHCR Representation
in Timor-Leste
PO Box 456
Dili
or
Estrada de Balido
Dili
Tel: +670 33 13 547
Fax: +670 33 13 554

TUNISIA

UNHCR Honorary
Representation in Tunisia
BP 863
1035 Tunis
or
61 Boulevard Bab Benat
1035 Tunis

Tel: +216 715 73586
Fax: +216 715 70168

TURKEY

UNHCR Representation
in Turkey
12. Cadde, 212. Sokak No 3
3 Sancak Mahallesi,
Cankaya
Ankara
Tel: +90 312 409 7000
Fax: +90 312 441 2173

TURKMENISTAN

UNHCR Representation
in Turkmenistan
40, Galkynysh Street
744013 Ashgabat
Tel: +993 12 425 684
Fax: +993 12 425 691

UGANDA

UNHCR Representation
in Uganda
PO Box 3813, Kampala
or
Plot 18 Prince Charles Drive
Kololo
Kampala
Tel: +256 41 231 231
Fax: +256 41 256 989

UKRAINE

UNCHR Regional
Representation in Ukraine
PO Box 122
Kyiv 01015
or
32A, Sichnevogo
Povstannya Str,
Kyiv 01015
Tel: +380 44 573 9424
Fax: +380 44 288 9850

UNITED KINGDOM

UNHCR Representation
in United Kingdom
Stand Bridge House
138-142 Strand
London
WC2R 1HH
Tel: +44 20 7759 8090

Fax: +44 20 7759 8119

**UNITED STATES
OF AMERICA**

UNCHR Regional
Representation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Caribbean
1775 K Street, NW,
Suite 300
Washington DC 20006
Tel: +1 202 296 5191
Fax: +1 202 296 5660

UZBEKISTAN

UNHCR Representation
in Uzbekistan
14 Mahmood Torobi Str
700090 Tashkent
Tel: +998 71 120 68 93
Fax: +998 71 120 68 91

VENEZUELA

UNCHR Regional
Representation for Northern
South America
Apartado Postal 69045
Caracas 1062-A
Or
Parque Cristal, Torre Oeste
Piso 4, Oficina 4-4, 4-5 y 4-6
Av. Francisco de Miranda
Urbanizacion Los Palos
Grandes
Caracas
Tel: +58 212 286 3883
Fax: +58 212 286 9687

VIETNAM

UNHCR Representation
in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60 Rue Nguyen Thai Hoc
Ba Dinh District
Hanoi
Tel: +84 4 845 78 71
Fax: +84 4 823 20 55

YEMEN

UNHCR Representation
in the Republic of Yemen
PO Box 12093

Sana'a
or
Algeria Street, No. 38
Building No 2
Sana'a
Tel: +967 1 469 771
Fax: +967 1 469 770

ZAMBIA

UNHCR Representation
in Zambia
P.O. Box 32542
10101 Lusaka
or
17C Leopards Hill Road
Kabulonga
10101 Lusaka
Tel: +260 1 265 619
Fax: +260 1 265 914

ZIMBABWE

UNHCR Office
of the Chief of Mission
in Zimbabwe
P.O. Box 4565
Harare
or
2nd Floor, Takura House
67-69 Union Avenue
Harare
Tel: +263 4 793 274
Fax: +263 4 708 528

**UNITED NATIONS
(New York)**

Office of UNHCR
in New York
PO Box 20
Grand Central
New York
NY 10017
or
220 East 42nd Street
Suite 3000
New York
NY 10017
Tel: +1 212 963 00 32
Fax: +1 212 963 00 74

유엔난민기구 (UNHCR)

UNHCR, 즉 유엔난민기구는 전 세계의 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고, 난민문제를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인류공통의 과제임을 호소하며 이를 위한 활동을 선도하는 권한을 유엔총회로부터 부여 받았습니다.

UNHCR은 궁극적으로 난민들의 인권과 복지 보호를 추구합니다. 또한 UNHCR은 모든 사람들이 비호를 구할 권리가 있으며, 또한 자국이 아닌 타국에서 안전한 피난처를 찾을 권리, 또는 자발적으로 본국으로 귀환할 권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난민들의 본국 귀환을 돕거나, 다른 국가에서의 정착을 도움으로서 유엔난민기구는 곤경에 처한 그들에게 영구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UNHCR의 집행위원회와 유엔 총회는 보호가 필요한 무국적자나 국적문제가 불분명한 경우, 혹은 실형민 등의 사람들을 보호할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UNHCR은 다른 단체 및 기관들이 인간의 기본 인권의 보장과 평화적인 분쟁 해결을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강제에 의한 주거지 박탈이나 인권 침해를 줄이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UNHCR은 인종, 종교, 정치적 소견 및 성별에 관계없이 난민들에게 공정하고 보호와 지원을 제공합니다. 유엔난민기구는 난민들이 스스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격려함으로써 참여의 원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UNHCR은 각 국 정부와 지역 기구, NGO 및 국제기구와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국제의회연맹 (IPU)

1889년에 창설된 국제의회연맹은 주권국가들의 의회 대표들로 구성된 국제기구입니다.

국제의회연맹은 대의제도 강화를 통하여 세계 평화와 협력을 추구합니다. 이러한 목표 아래, 국제의회연맹은 모든 국가의 의회와 의원들 간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관심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한 문제 제기를 통해 이들 사안에 대한 각 국 의회와 의원들의 주의를 환기시킴으로서, 의회 정치 발전에 필수요소인 보편적 인권 보호와 발전에 기여합니다.

국제의회연맹은 유엔과 공통의 목표를 공유하며, 유엔 기구들과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다. 또한 국제의회연맹은 동일한 이상과 목표를 위해 힘쓰고 있는 여러 지역 의회기구와 국제기구, NGO들과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 Inter-Parliamentary Union 2005

Published by the Inter-Parliamentary Union
with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produced, stored in a retrieval system, or transmitt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electronic, mechanical, via photocopying, recording, or otherwise—without the prior permission of the Inter-Parliamentary Union or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This publication is circulated subject to the condition that it shall not by way of trade or otherwise be lent, sold, hired out, or otherwise circulated without the publisher's prior consent in any form of bidding or cover other than in which it is published and without a similar condition, including this condition being imposed on the subsequent publisher.

ISBN 92-9142-285-1 (IPU)

IPU Headquarters

Inter-Parliamentary Union
Chemin du Pommier 5
Case Postale 330
CH-1218 Le Grand Saconnex
Geneva
Switzerland
Tel: +41 22 919 41 50
Fax: +41 22 919 41 60
E-mail: postbox@mail.ipu.org
Web site: www.ipu.org

**Office of the Permanent
Observer
Of the IPU to the UN**

Inter-Parliamentary Union
220 East 42d Street
Suite 3002
New York, N.Y. 10017
USD
Tel: +1 212 557 58 80
Fax: +1 212 557 39 54
Email: ny-office@mail.ipu.org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Case Postale 2500
1211 Geneva 2
Switzerland
Tel: +41 22 739 8111
Fax: +41 22 739 7353
Web site: www.unhcr.org

**UNHCR Represent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유엔난민기구 한국 사무소**

7F., Kumsegi Bldg., 16 Euljiro 1 Ga, Joong-Ku, Seoul 100-191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16 금세기 빌딩 7층 (우. 100-191)
Tel: +82 2 773 7011
Fax: +82 2 773 7014
Email: unhcr@unhcr.or.kr
Web site: www.unhcr.or.kr